

# 연구실안전법 주요 FAQ



|                  |                                |
|------------------|--------------------------------|
| <b>Chapter I</b> | <b>연구실안전법 적용일반(총칙)</b> ..... 5 |
|                  | 1. 법의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 6 |
|                  | 2. 법 적용 범위(제3조) ..... 13       |
|                  | 3. 그 외 총칙 관련(제4조~제5조) ..... 18 |

|                   |  |
|-------------------|--|
| <b>Chapter II</b> | <b>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b> ..... 21                 |
|                   | 1.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 및 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제8조) ..... 22 |
|                   | 2. 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제9조) ..... 23                 |
|                   |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제10조) ..... 28               |
|                   | 4.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제11조) ..... 36                   |

|                    |  |
|--------------------|--|
| <b>Chapter III</b> | <b>연구실 안전조치</b> ..... 39                 |
|                    | 1.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제12조) ..... 40      |
|                    | 2.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제13조~제16조) ..... 42 |
|                    |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제17조) ..... 49     |
|                    | 4.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제19조) ..... 52             |
|                    | 5. 연구실 안전 교육·훈련(제20조) ..... 53           |
|                    | 6. 건강·검진(제21조) ..... 59                  |
|                    | 7. 연구실 안전관리비(제22조) ..... 61              |

|                   |                                      |
|-------------------|--------------------------------------|
| <b>Chapter IV</b> | <b>연구실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보상</b> ..... 73    |
|                   | 1. 연구실사고 보고 및 조사(제23조~제24조) ..... 74 |
|                   | 2. 연구실 안전보험(제26조~제27조) ..... 76      |

|                  |                                    |
|------------------|------------------------------------|
| <b>Chapter V</b> | <b>기 타</b> ..... 81                |
|                  | 1. 대학·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제29조) ..... 82 |
|                  | 2. 연구실안전관리사(제34조~제38조) ..... 84    |
|                  | 3.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제28조) ..... 87   |



Chapter

I

## 연구실안전법 적용일반(총칙)

1. 법의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2. 법 적용 범위(제3조)
3. 그 외 총칙 관련(제4조~제5조)



Chapter

# I 연구실안전법 적용일반(총칙)



## 1 법의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 1.1. 연구실안전법 제정 취지 및 목적

**Q**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증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나요?

**A** 연구실안전법은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을 하는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 시 연구활동 종사자들이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5년 3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연구실안전법이 추가로 제정된 이유는 ① 산업현장과 유사한 위험환경에 노출되면서도 기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아니어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연구활동종사자들이 존재하고, ② 연구실의 위험요인은 일반 산업현장에 비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연구활동의 특성상 새로운 물질의 취급, 연구장비의 제작·활용 등으로 일반 사업장과 다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③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에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제공하면서 필요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연구실과 일반 산업현장(사업장 또는 작업장)의 차이점

| 연구실   | 사업장(또는 작업장)                                  |
|---|--|
| 다품종 소량 유해물질 취급  | 소품종 다량의 유해물질 취급                              |
| 새로운 장치와 공정을 연구·개발하여 위험의 범위와 크기 예측 곤란                    | 정형화된 공정작업으로 위험의 범위 및 크기 예측 가능                |
| 소규모 공간에서 다수의 미숙련 연구활동종사자가 유해물질, 연구장비, 연구재료 등 취급         | 상대적으로 대규모 장소에서 다수의 근로자가 대형 제조시설, 장비, 물질 등 취급 |
| 학교나 연구기관에 설치된 연구실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사고발생 시 주변 생활공간까지 피해확산 우려 | 상대적으로 도심 외곽에 위치                              |

따라서 이러한 연구실은 일반 사업장과 다른 안전관리 기준이나 절차에 따라 관리가 필요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타 안전법과 중복이 되는 사항은 법 제3조 및 시행령 별표 1 등에 따라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 1.2. 과학기술분야

#### 과학기술분야 정의

**Q**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는 무엇인가요?

**A** <과학기술분야>는 정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 공공 연구기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과학기술분야로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이견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의 경우 연구실안전법에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의 대학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체계 기준에 따라 과학기술분야를 정합니다. 이 법에 해당하는 과학기술분야는 공학계열, 자연과학 계열, 의학 계열로 분류되는 전공 학과에 해당하는 분야로 규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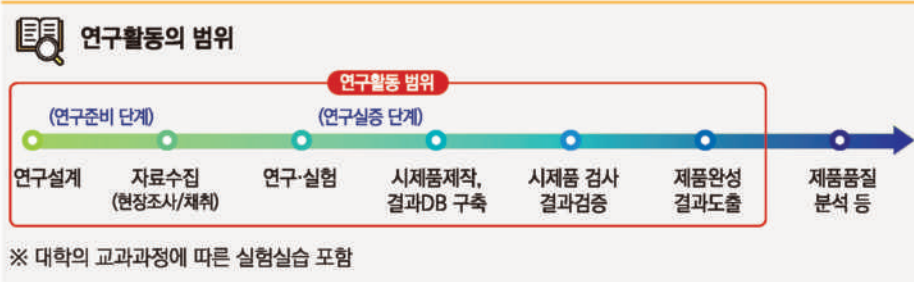
### 1.3. 연구활동

#### 연구활동 정의

**Q** 연구활동은 무엇인가요?

**A** 연구실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활동>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1) 사물, 기능, 현상 등에 관하여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거나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창조적인 노력 및 탐구, 2) 연구개발 과정에서 직접 필요한 시험/측정/분석, 기계·기구 장치의 구입·설치 및 건설, 동식물의 육성, 문헌조사 등의 활동, 3) 연구활동과 관련된 연구용 기자재 운용, 도면의 작성, 가공조립, 실험/검사/측정 등의 연구지원 업무와 함께 실험실습 교육도 포함됩니다.

이때, 생산과정에서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단순화되고 정형화된 품질테스트나 분석업무는 원칙적으로 연구활동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그러한 행위가 연구개발 절차의 한 부분(제품 개발단계의 가제품 테스트 등)이거나 시험·분석 과정이 새로운 지식 축적 및 창조적인 활동으로 이어진다면 포괄적인 의미에서 연구활동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 1.4. 연구주체의 장

#### ☞ 학교, 연구기관 등 법인의 연구주체의 장 판단

**Q** 학교, 연구기관 등이 하나의 법인으로 같이 되어 있을 경우, 연구주체의 장은 누구인가요?

**A** 학교, 연구기관 등이 하나의 법인으로 같이 되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기관을 대표하는 총장 또는 기관장이 연구주체의 장이 됩니다.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건강검진, 연구실안전관리비 집행 등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이 있으며, 내부방침 (안전관리규정, 위임전결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분장할 수 있습니다.

####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주체의 장 판단

**Q**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주체의 장은 누구인가요?

**A**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주체의 장은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시 등록된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장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 ☞ 두 개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기업의 연구주체의 장 판단

**Q** 하나의 기업(법인)에서 두 개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경우 연구주체의 장은 누구인가요?

**A** 하나의 기업(법인)에서 두 개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하나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본원과 분원을 운영하는 경우
- ② 두 개의 연구소가 각각 별도의 기업부설연구소로 승인받은 경우(소재지가 다르거나 연구분야가 다른 경우)

전자의 경우에는 본원과 분원을 하나의 연구소로 판단하여 기업의 대표자 또는 본원의 기업부설 연구소장을 연구주체의 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기업부설연구소로 판단하므로 각 연구소의 기업부설연구소장을 연구주체의 장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1.5. 연구활동종사자

#### ☞ 연구활동종사자의 범위

**Q** 연구활동종사자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 법 제2조제8호에 의거,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제3호에 따른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각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합니다.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연구활동종사자는 (전임 및 비전임)교수인력, 전임연구원, 연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연구보조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수업의 일환으로 실험·실습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연구활동과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연구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대학생(수업 수강생)이라도 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활동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 부서의 경우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등록된 연구개발인력 중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을 의미하며 연구관리직원은 제외합니다.

#### ☞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인력 중,

1. 연구전담요원은 연구활동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연구보조원은 연구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검사 및 측정 등 연구보조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학의 연구활동종사자 판단**

**Q** 대학의 과학기술분야(자연계열) 중 수학과, 응용통계학과, 컴퓨터정보학과 등 실험실습을 하지 않거나 실험실습을 하더라도 위험하지 않은 실습을 하는 학생들을 꼭 연구활동종사자에 포함 시켜야 하나요?

**A** 연구실안전법의 제정 취지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 확보와 연구실 사고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 등에 있으므로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자라면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최대한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의 대학 교육 편제단위 표준분류체계 기준(<https://www.academyinfo.go.kr/>)을 적용하여 과학기술분야 학생들을 모두 원칙적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 포함하고 있으며, 수학과, 응용통계학과, 컴퓨터정보학과는 공학계열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구실안전법 적용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학과의 교수, 연구원, 대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연구활동종사자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실험·실습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하여도 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활동종사자 판단**

**Q** 기업부설연구소입니다. 다음 각각 연구활동종사자에 해당하나요?

1. 기업부설연구소장(연구주체의 장)
2. 공장장을 겸직하고 있는 연구소장(연구전담요원 아님)
3. 연구실에서 자료(문헌, 특허)조사만 수행하는 연구원
4. 해당 연구소의 등기임원

**A**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개발인력 중 전담요원, 연구보조원(연구관리직원 제외)을 말합니다. 따라서

1. 연구소장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원(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인 경우 연구활동 종사자에 해당하나, 연구원이 아닌 회사임원(대표, 이사 등)이 연구소장을 할 경우 연구활동종사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연구소장이 연구전담요원이 아니므로 연구활동종사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연구활동종사자에 해당합니다.
4. 등기임원은 연구활동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활동종사자의 의무**

**Q** 연구실안전법 이행에 있어 연구활동종사자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A** 연구실안전법은 주로 연구주체의 장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연구실안전법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실제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연구실안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의무 및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 조문                     | 내 용  |
|--------------------------|--|
| 법 제5조 (연구주체의장 등의 책무) 제5항 | 연구활동종사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 사고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과 규범 등을 준수하고 연구실안전환경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 법 제12조(안전관리규정) 제2항       |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 법 제20조(교육·훈련) 제2항        | 연구주체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건강검진 등을 이행하는 등 연구실 안전 환경 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 법 제25조(연구실사용제한) 제2항      |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실의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연구실의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주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 법 제39조(신고) 제1항           | 해당 연구실에서 연구실안전법(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
| 시행령 제10조(안전점검) 제1항       | 안전점검 종류 중 일상점검을 연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1회 실시하여야 한다.  |

## 1.6.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Q** 모든 연구실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나요?

**A**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과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 비치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구 착용 등 연구활동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중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지침

**Q**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있나요?

**A**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역할은 법 제9조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를 보조하여 일상점검 등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권한과 책임은 각 기관별로 안전관리규정에 명시하여 자체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2. 법 적용 범위(제3조)

### 2.1. 연구활동종사자 수에 따른 연구실안전법 적용대상

#### 연구활동종사자 수에 따른 연구실안전법 적용 여부

**Q**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대학·연구기관 등이 설치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각 연구실에 대하여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인 미만”이라함은 전체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종사자가 10인 미만임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 실험실의 연구활동종사자가 10인 미만을 의미하는 건가요?

**A** 이 법의 적용대상 기관은 과학기술분야 대학·연구기관 등이며, 현행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규정된 10인 미만이라 함은 1개 연구실에 10인 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모두 합한 인원이 10인 미만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실이 3개(A, B, C) 있는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종사자가 A연구실에 5명, B연구실에 4명, C연구실에 3명이라면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수를 합한 인원이 10인 이상이므로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때, 지리적으로 떨어진 분교나 분원에 있는 연구실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활동종사자 수에 따른 연구실안전법 적용 여부

**Q** 기업부설연구소 인원(전담요원, 연구보조원)은 10명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 연구활동종사자 수는 7명입니다. 이 경우 연구실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건가요?

**A**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등록된 연구개발인력 중 전담요원, 연구보조원(연구관리직원 제외)이 연구활동종사자에 해당하며,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개발인력을 기준으로 연구실안전법 적용 유무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등록된 연구개발인력의 인력 및 연구업종 등이 실제 연구활동종사자 현황과 다를 경우, 「기초연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반드시 변경·신고(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하여야 하며, 변경 전까지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인원이 10명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이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기업부설연구소입니다. 시행령 [별표 1]에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의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원을 포함해서 50명 미만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연구원 50명 미만을 의미 하나요?

**A** 기업부설연구소의 근로자(연구활동종사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등록된 연구개발인력 중 전담요원, 연구보조원을 의미하며 연구관리직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시행령 별표 1에서 말하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이란 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의 합이 50명 미만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2.2 수행 연구활동에 따른 연구실안전법 적용 여부

### ☞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분야의 연구실 안전법 적용

**Q** 당사는 상시근로자 200명 미만, 상시연구원 40명 정도의 규모로 사무실 형태의 기업부설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실험기구나 연구장비 없이 사무실에서 개인 업무용 노트북으로 웹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것이 주된 연구 업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연구실 안전법에 의한 안전환경관리자 지정, 교육 및 관련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것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업종의 특성으로 제외대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법에서는 신고해야 하고 어떤 법에서는 면제 대상이 되는 상황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A** 연구실안전법의 제정 취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근로자나 적용대상에서 제외 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일반 사무실과 같은 건축 설계, 정보처리, 통계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실도 법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연구실안전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른 법령과 중복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타법에 의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연구실안전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이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경우 교육시간, 안전점검 주기를 경감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면제를 받는 조항에 대해서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일반 사업장과는 다른 특성을 보유한 연구실을 고려하여 제정된 연구실안전법의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안전한 연구환경을 확보하고 연구활동종사자가 예측할 수 없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 야외 실험의 법 적용범위 포함여부

**Q** 야외에서 행해지는 실험·실습도 연구실안전법 제3조(적용범위)에 포함되나요? 또한 움직이는 실험·연구용 비행기도 법에 의한 연구실로 볼 수 있나요?

**A** 연구실안전법은 대학·연구기관 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연구실 또는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는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동식물 시료 채취, 탐사 등),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비행기나 선박의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단, 타 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직업훈련 관련 실험·실습(조종훈련, 작물재배 현장실습 등)은 연구활동에서 제외됩니다.

### ☞ 수질검사기관 법령 적용 여부

**Q**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연구실의 범위와 관련하여 각 자치 단체의 수도사업소는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의 수질실험실도 연구실로 보아 동 법령에 적용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순수한 연구목적의 기관만 적용을 받는 것인가요?

**A** 연구실안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국·공립 연구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기관 중 직제에 연구활동 기능이 있고,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실을 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각 자치단체 수도사업소의 수질실험실은 환경의 보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연구활동을 수행하므로 연구실안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되며, 연구실안전법 적용 대상입니다.

수질실험실 외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 검역본부, 농업기술원 등 순수한 연구목적을 위해 설치한 기관이 아니더라도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면 이 법의 적용대상 기관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 검사 활동(수질검사 등)만을 수행하거나 기관 내 연구활동종사자의 총 인원(본원과 분원 포함)이 10명 미만인 경우 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2.3. 기관의 조직 체계에 따른 연구실안전법 적용 여부

#### ☞ 법인 조직 구성에 따른 연구실안전법 대상 여부

**Q** 당사연구소는 ○○회사의 일부 부서로서 제품 연구, 개발을 담당합니다. 당사연구소는 ○○라는 법인으로 재무, 인사, 홍보 등 지주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직과 같은 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며 장소가 떨어져 있지만 독립성이 없는 조직입니다. 이 경우 연구소는 기업체의 연구소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야 하는지요?

**A**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 연구활동종사자들의 법적 지위가 근로자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본적으로 적용받습니다. 동시에 연구실안전법 제2조마목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규모가 10인 이상인 경우 연구실안전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의 중복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시행령 별표 1에 연구실안전법 규정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적용 제외되는 규정 이외의 연구실안전법 규정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아울러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각 호에 따른 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에 의해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연구실안전법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대상 연구실   |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
|--|---------------|
| 가. 「산안법」 제17조(안전관리자)를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10조        |
| 나. 「산안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11조        |
| 다. 「산안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및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를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12조        |
| 라. 「산안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를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20조        |
| 마. 「산안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적용받는 연구실로서 연구활동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연구실                           | 법 제19조        |
| 바. 「산안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를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14조 및 제15조 |
| 사. 「산안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건강진단)을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21조        |

#### ☞ 대학교 내 입주업체의 연구실안전법 적용여부 및 관리주체

**Q** 대학교 내에 입주해 있는 외부업체(본교 교수가 센터장인 검사기관, 산학협력단에 입주한 외부업체 등) 실험실의 경우, 연구실안전법 적용 여부 및 관리주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대학 연구실이 아닌 외부업체, 외부검사기관 등 관련 모든 외부업체(연구주체의 장이 대학과 다른 경우)의 경우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립적인 기관으로 연구실 안전법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자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 주체는 협약 등 합의하에 학교 또는 외부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 내부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사고 발생에 따른 기관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기관에서 외부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등 연구실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 대학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10인 미만인 연구실의 경우 연구실안전법은 제외대상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연구실 통합관리

**Q** 두 개의 연구실이 연구실책임자가 동일하고 연구장비 및 업무가 유사하여, 효율적인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해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개의 연구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나요?

**A** 연구실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은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때, 연구실은 연구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완전히 물리적으로 구분된 공간(연구실과 연구실 사이에 천장부터 바닥까지 격벽으로 분리된 공간)을 하나의 연구실로 간주하여 별도의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활동 내용이 동일하고 기관에서 안전상의 목적을 위하여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연구실로 통합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 2.4. 연구실안전법 대상 제외

#### ☞ 연구실안전법 대상 제외 및 조치방법

**Q** 우리 기관은 연구활동종사자가 10인 미만으로 축소되어 연구실안전법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상 제외를 위한 신고 또는 허가 절차가 있나요?

**A** 연구실안전법은 연구실의 신설·폐쇄 등에 따른 등록·허가·신고 등 의무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공문 제출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기관 현황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 기관정보를 최신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자체 안전관리규정 등을 운영하시어 연구실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B 그 외 총칙 관련(제4조~제5조)

### 3.1. 실태조사

####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응답에 관한 사항

**Q** 매년 4월 30일까지 법 이행사항을 보고하는데, 실태조사에 꼭 응해야 하나요?

**A** 법에 따라 반드시 보고해야하는 사항은 총 6가지로 ① 사고보고(법 제23조) ②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 보고(법 제16조) ③ 연구실 사용제한 조치 등의 보고(법 제25조) ④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변경 사항 보고(법 제10조) ⑤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내역보고(법 제22조) ⑥ 보험가입 내역 보고(법 제26조)가 있습니다. 이 중 ①~④항에 관한 사항은 사유발생 시 수시로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⑤~⑥항에 관한 사항은 매년 4월30일까지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제4조와 통계법 제32조에 따라 성실하게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는 법 적용대상 기관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2016년도부터 ⑤~⑥에 관한 사항은 연구실안전 정보시스템을 통해 법 이행사항과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시 응답한 사항에 관하여는 연구실 안전 이행사항 검사, 중·장기 정책수립,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된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사실대로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법 이행사항 보고에 대한 불성실 응답 및 미응답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3.2.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 긴급세척장비의 설치·운영 기준

**Q**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중위험·고위험 연구실의 경우 긴급세척장비(비상 샤워장치 및 세안장비)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비상샤워장치 설치하는 사업장 상황에 설치제한(급/배수 문제 제한)이 있어, 비상세안장치를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전체 실험실 대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비상세안장치나 비상샤워 장치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요? 안했을 경우 과태료가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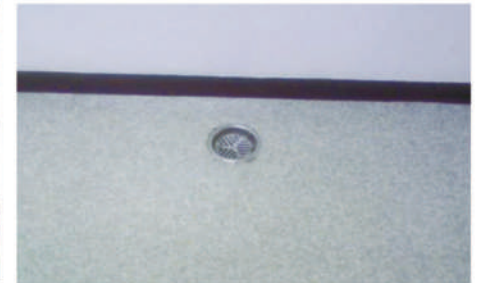
**A** 긴급세척설비(비상샤워장치, 세안장비)는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이행 안내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간물, '22. 10.) 및 KOSHA GUIDE D-44-2016 "세안설비 등의 성능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에 근거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비상샤워장치는 유해화학물질이 묻었을 때 긴급하게 몸 전체를 세척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된 설비를 말하고, 세안장비는 유해화학물질이 눈에 들어갔을 때 세척하는 기구로, 그 역할이 서로 다르므로 세안설비와 긴급샤워기를 각각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연구실안전법의 개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긴급샤워기의 급·배수 문제는 천정과 바닥의 시공 작업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사진 참고)



긴급샤워기 천정 급수(예)



긴급샤워기 바닥 배수구(예)

#### 연구실 안전설비 및 장비의 설치·운영 기준

**Q**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에 따라 흡후드(Fume Hood)는 1년 1회 이상의 주기적인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제어풍속은 3개월에 1회 측정하여 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8))한 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제어풍속 0.4m/s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구실 안전법에는 이러한 장치의 성능이나 점검에 관한 사항이 있나요? 흡후드 외에도 연구실 장비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이 있나요?

**A** 흡후드 등 국소배기장치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간한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이행 안내서('22. 10.) 및 연구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19. 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이행 안내서에 따르면 흡후드는 주기적(분기별 1회 이상)으로 제어풍속을 측정하여 적절한 성능이 유지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제어풍속은 개방상태로 개구면에서 가스상태의 경우 면속도 0.4m/s, 입자상태의 경우 0.7m/s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흡후드 외에도 비상샤워장치, 생물안전작업대 등 안전장비에 대한 설치·운영 기준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제6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연구실의 흡후드, 안전캐비닛, 스프링클러 등 안전설비는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이행 안내서'의 내용과 더불어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Chapter

II

##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

1.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 및 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제8조)
2. 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제9조)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제10조)
4.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제11조)



Chapter

II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



1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 및 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제8조)

공표제도 대상기관 및 정보열람 범위

Q 공표제도 대상기관 및 정보열람 가능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A 공표제도의 대상기관은 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실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관입니다. 또한, 공표되는 정보는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 국민에게 공개됩니다.

공표제도 정보변경 요청

Q 공표시스템에 등록된 우리 기관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데, 변경할 수 있나요?

A 공표되는 연구실 안전정보는 기관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안전담당자)가 실태조사에서 직접 입력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며, 실태조사 정보검증 기간 및 공표제도 사전공표 기간과 같이 입력한 정보를 기관 자체적으로 검증·수정할 수 있는 검증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내에 기관의 연구실 안전정보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제9조)

2.1 연구실책임자 자격 및 지정

연구실책임자의 자격과 지정의무

Q 연구실책임자의 자격은 무엇이며,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A 연구실안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해야 하고, 연구실책임자의 자격은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해당 연구실의 연구책임자 또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연구활동과 연구실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연구실책임자 지정 시 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보고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관의 내부규정 또는 업무절차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한 내부결재(승인) 및 지정현황 관리 등을 권장드립니다.

연구실책임자 지정과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Q 안전관리 조직 구성 시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책임 및 권한에 대한 규정은 없나요?

A 법 제9조에 따르면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과 연구활동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연구활동 시작 전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 유해인자에 맞는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는 상기 규정을 숙지하시고, 기관별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규정(법 제12조)에 안전관리조직체계 및 직무,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권한과 책임 등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내규로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연구실책임자 지정

**Q** 50명 미만 기업부설연구소로, 총 3개의 연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연구실책임자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신고된 인원이어야 하는지요? 건물 안전관리를 하는 인원을 지정할 수 없나요?
- 2) 연구소장이 연구실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나요?
- 3) 연구실책임자는 각 연구실마다 지정되어야 하나요? 1명의 연구실책임자가 3개의 연구실에 대하여 연구실안전법 상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 4) 현재 연구소에 신고되지 않은 인원으로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데, 안전관리 담당자가 연구실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나요?

- A**
- 1) 연구실책임자는 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하며 연구실책임자는 각 연구실에 소속된 사람으로 연구소에 신고된 인원이어야 합니다. 건물 안전관리를 하는 관리자 등과는 별도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 2) 연구실안전법의 인적요소는 연구주체의 장,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안전 관리담당자, 연구활동종사자가 있습니다. 이 중 연구실책임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7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만약 연구소장이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연구실책임자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 3) 1명의 연구책임자가 2개 이상의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로 지정될 수는 있으나 해당 연구실의 연구과제를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야 하며,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 및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등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 4)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법에 따른 자격요건이 없으나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필요시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1인 연구실인 경우 연구실책임자가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겸임할 수는 있으나, 연구실책임자를 제외한 1인 이상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 연구실책임자의 연구실 상주 여부

**Q** A지역에 있는 연구실의 연구실책임자를 B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으로 지정 가능하나요?

**A** 연구실안전법에서는 연구실책임자 지정 기준으로 상주 여부, 장소 등을 별도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 보호구 착용, 일상점검 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연구실의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근무하는 인원을 연구실책임자로 지정하는 경우,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우므로, 직접적인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동일지역의 인원으로 지정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 🔗 공동 연구실 안전관리

**Q** 공동연구실이 있는데 이 연구실을 사용하는 교수님이 5명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연구실 책임자를 5명으로 지정해도 되나요?

**A**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명을 연구실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실책임자는 1명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적기준을 초과하여 지정하는 경우에 대해 별도의 제한 기준이 없으므로 5명의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도 무방하나, 연구실책임자의 의무(연구활동종사자 교육, 보호구 비치, 관리, 일상점검 확인 등)를 모두 수행하여야 하므로 기관의 연구안전 현황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실 책임자 간 업무를 분장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2.2 보호구 비치 및 착용 기준

### 🔗 연구실책임자의 책무(보호구 비치 및 교육 관련)

**Q** 연구실에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의 착용여부를 관리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A**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 종사자로 하여금 착용하게 하여야 합니다. 연구활동종사자가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의 종류는 시행규칙 별표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험복 기준

**Q** 실험복의 규격 또는 성능 기준이 있나요?

**A** 실험복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품이 아니며 규격·성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연구실 환경 및 연구활동 등에 적합한 실험복을 구비·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화학물질 취급 시 화학물질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용 보호복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품입니다. 참고로 해당 보호복은 전신보호복, 부분보호복(상의, 하의, 실험코트, 앞치마, 토시)가 있으므로 연구 환경에 따라 알맞은 보호복을 착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전화 기준

**Q** 구멍이 없고, 방수재질인 슬리퍼 형태의 안전화를 착용할 수 있나요?

**A** 안전화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것으로,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제1항 및 제89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 및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안전화의 종류는 보호구안전인증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5호) [별표 2]에 따라 가죽제안전화, 고무제안전화, 정전기안전화, 발등안전화, 절연화, 절연장화, 화학물질용 안전화 등이 있으므로 연구환경에 알맞은 안전화를 선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안경 기준

**Q** 보안경, 고글의 정의가 있나요? 또는 안경을 착용한 학생의 경우, 사이드실드 부착 시 보안경으로 판단 할 수 있나요?

**A** 보안경은 차광 및 비산을 위험방지용 보안경과, 차광 기능이 없는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으로 나뉩니다. 눈에 해로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차광 보안경을 사용하시면 되고, 비산물 위험방지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일반 보안경을 착용하시면 됩니다. 안경을 착용한 학생의 경우, 도수렌즈 보안경을 사용하시면 되고, 사이드실드가 필요한 경우, 사이드실드 기능이 있는 보안경을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연구활동에 따른 보호구 안전인증기준〉

| 보호구 종류             | 정의   | 기준<br>(산업안전보건법 고시) |
|--------------------|--|--------------------|
| 보안경                |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질의 비산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경   | 보호구자율안전확인고시 [별표 2] |
| 보안면                |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질의 비산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안면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면   | 보호구자율안전확인고시 [별표 3] |
| 안전모                | 물체의 낙하,비래 및 추락에 따른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거나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모  | 보호구안전인증고시 [별표 1]   |
| 안전화                | 가. 물체의 낙하,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발 또는 발등을 보호하거나 물,기름,화학물질 등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화<br>나. 전기로 인한 감전 또는 정전기의 인체대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화 | 보호구안전인증고시 [별표 2]   |
|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 화학물질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 보호구안전인증고시 [별표 3의2] |
| 방진마스크              | 분진, 미스트 또는 흙이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진마스크   | 보호구안전인증고시 [별표 4]   |
| 방독마스크              | 유해물질 등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착용하는 방독 마스크   | 보호구안전인증고시 [별표 5]   |
|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 눈에 해로운 자외선, 적외선 및 강력한 가시광선 또는 비산물로부터 작업근로자의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경   | 보호구안전인증고시 [별표 10]  |

## B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제10조)

### 3.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업무 및 자격요건

####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

**Q** A기관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채용된 신입직원입니다. 시행령 제8조제4항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 제6호 “그밖에 법 제12조제1항의 안전관리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과 관련한 관계법과 이행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연구시설 안전확보와 관련한 관계법과 이행사항(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4항 제6호)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관련법이 다양하므로 매년 개정법을 법제처 (<http://www.moleg.go.kr>)에서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예시)>

| 관계법        | 내 용   |
|------------|---|
| 1. 산업안전보건법 | 가. 안전보건표지, 화학물질분류표지(GHS), 포스터 등 부착(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170조)  |
|            | 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게시 및 비치(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시행규칙 제167조), 경고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시행규칙 제170조)   |
|            | 다.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의 방호장치 설치(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시행령 제70조, 시행령 별표 20, 시행규칙 제98조, 제99조, 기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참고)   |
|            | 라. 세척설비(긴급샤워기, 세안설비) 설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79조의2, 제448조, 제465조, 제508조, 제589조, 제599조, 제615조)   |
|            | 마. 보호구지급, 보호구 착용지도, 위생적관리 및 보관(안전보호구함 제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08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254조, 제310조, 제449조, 제 450조, 제451조) |
|            | 바. 작업환경, 실내공기오염도, 소음 등 측정(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시행규칙 제186조, 제188조, 제189, 제190조)  |
|            | 사. 기타 위험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보건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등 참고)   |

| 관계법                               | 내 용   |
|-----------------------------------|---|
| 2. 소방기본법<br>(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가. 바닥면적 33㎡ 이상 구획된 각실 및 각층 보행거리 20m 이내 소화기 배치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
|                                   | 나.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 3. 위험물안전관리법                       | 옥내 위험물저장소 설치(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규칙 제29조)   |
|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가스누설경보장치 및 가스용기 전도방지장치 설치(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8)  |
| 5. 원자력안전법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검사(원자력안전법 제22조, 제56조), 방사선장해 방지조치(같은 법 제91조)                                      |
|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매년 5월 25일 방재의 날에 따른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재난안전 교육·홍보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 |
| 7. 화학물질관리법                        |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소량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4호) 등                       |

####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자격요건

**Q** 시행령 별표 2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 중 제3항에서 안전관련학과 졸업 후 연구실안전관리 업무 2년인 자가 있는데, 여기서 안전관련학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별표 1에 따르면 안전관리 관련 국가기술자격은 ▲ 가스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소방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 가스기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인간공학기사, 화재감식 평가기사 ▲ 가스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소방설비 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입니다.

이를 위해 제시한 안전관리 관련학과(같은 고시 별표 2)는 다음과 같습니다(가나다 순).

**Q** 가스안전공학(과·전공), 가스에너지공학(과·전공), 건강관리학과, 건강스포츠학과, 건설방재공학(과·전공), 건설안전(과·전공), 건설안전시스템과, 건축설비소방과, 건축설비소방안전전공, 건축소방설비(학)(과·부·전공), 건축소방안전과, 건축소방행정학(과·전공), 공중보건학과, 기계설비소방안전과, 도시방재학(과·전공), 방재시스템(과·전공), 방재안전공학(과·전공), 보건산업안전학(과·전공), 보건산업공학과, 보건환경안전학(과·전공), 산림환경과학(과·전공), 산업·재료·안전공학계열, 산업공학(과·전공), 산업보건학(과·전공), 산업안전(과·전공), 산업안전관리과, 산업안전보건학(과·전공), 산업안전위생과, 산업위생(과·전공), 산업환경보건(과·전공), 선박해양공학(과·전공), 소방건설계열, 소방공학과, 소방방재(과·전공, 학부), 소방방재공학(과·부·전공), 소방방재시스템전공, 소방방재정보((학)과, 전공), 소방방재정보학과, 소방방재행정((학)과, 전공), 소방방재환경학(과·전공), 소방방재관리학(과·전공), 소방산업안전과, 소방설비공학(과·전공), 소방시스템(과, 코스), 소방안전(과, 전공, (공)학과), 소방안전관리(학)(과, 전공), 소방안전구급((학)과, 전공), 소방안전복지전공, 소방학과, 소방행정학(과, 부), 소방환경관리과, 소방환경방재(과·전공), 소방환경안전과, 소방환경학과, 스포츠·건강과학과, 스포츠건강과학과, 승강기안전관리(과·전공), 시스템안전설계계열, 식품안전환경학(과·전공), 안전공학과, 안전관리과, 안전보건과, 안전보건정보과, 안전복지전공, 안전시스템(과, 전공), 안전시스템설계전공, 안전환경시스템공학(과, 부, 전공), 에너지판건강학과, 위기관리학과, 응급구조(학)(과·전공), 재난관리공학(과·전공), 전기소방시스템전공, 전기소방안전(과·전공), 전자의용공학부, 지구환경과학(과·부·전공·과교·계열), 철도전기기관사(과·전공), 토목안전환경공학(과·전공), 해사안전환경전공, 해사위험관리전공, 해양안전시스템공학전공, 환경방재학(과·전공), 환경보건(학)(과·전공), 환경보건시스템과, 환경산업안전보건학과, 환경안전(보건)과, 환경안전시스템공학부, 환경위생(학)(과·전공), 환경위생화학공업(과, 학과), IT-디자인-소방계열

**Q** 현재 안전조직의 책임자를 맡고 계신 교수님을 안전환경관리자로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출신학과는 화학과이며, 별도의 자격증이나 안전관련 업무의 경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화학과 출신이다 보니 연구실의 화학약품과 관계되는 지도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안전관련 조직의 장을 맡아 안전관리 업무 추진에도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안전환경관리자 자격이 되나요?

**A**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안전법 제10조제3항 및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화학과 교수님은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준하는 학력을 갖추었으나, 학위 취득 후 안전관리 실무경력 4년 이상을 요하므로 해당 경력을 갖춘 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관리 실무경력에는 연구실 안전교육, 실험 폐기물관리,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연구실 안전점검 등이 있습니다.

###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정규채용 여부

**Q**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꼭 정규직이어야 하나요? 정직원이 아닌 위탁으로도 가능한가요?

**A** 연구실안전법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위탁(대행전문기관)과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구실안전환경안전관리자의 외부위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법 제10조 면제) 아울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시에는 정규직 또는 계약직 직원의 구분 없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 기준인 시행령 별표 2에 해당되는 직원을 선임하시면 됩니다.

### 3.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기준 및 절차

####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업무 전담 및 겸임

**Q** 연구활동종사자가 2,000여명인 경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선임을 2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전담인지요? 아니면 전담자를 별도로 두어 1명 전담, 2명 겸임인가요?

**A**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1,000명 이상 3,000명 이하일 경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되, 시행령 제8조제1항에 의거 연구활동종사자 중 상시 연구활동종사자가 300명 이상일 경우 또는 연구활동종사자(상시 연구활동종사자 포함)가 1,000명 이상인 경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들 중 1명 이상은 전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기관은 2명 이상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그 중 1명 이상은 반드시 전담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전담 업무 수행

**Q**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전담자로 지정되면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만 수행해야 하나요? 소방 안전관리자를 겸하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A**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시 연구활동종사자가 300인 이상이거나 연구활동종사자(상시 연구활동종사자를 포함한다)가 1,000명 이상인 기관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제4항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된 경우 타법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는 관리자(소방안전 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지위를 겸할 수 없으며, 시행령 제8조제4항의 업무만 전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겸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경우 타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동시선임이 가능하며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제6호 “안전관리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에 근거하여, 연구실안전법 이외의 관계법 이행사항도 같이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겸임

**Q**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연구실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나요?

**A** 연구실안전법에서 명시하는 연구실책임자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겸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별도로 지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분교 또는 분원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및 상주

**Q** 법 제10조제2항에서 분교 또는 분원이 있는 경우 분교 또는 본원과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분교 또는 분원에 상주하여야 하나요?

**A** 법에서 분교(또는 분원)에 분교(또는 본원)와 별도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두고자 하는 취지는 분교(또는 분원)의 연구활동 특성을 반영하고 밀착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교(또는 분원)에도 상주하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분교 또는 분원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Q** 서울(본원)의 연구활동종사자가 1,500명이고 대구(분원1)는 100명, 부산(분원2)에는 8명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있을 때,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몇 명을 어디에 지정해야 될까요?

**A** 기관 전체의 연구활동종사자가 1,608명으로 귀 기관은 연구실안전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본원과 분원에 별도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① 본원의 경우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이므로 2명 이상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하고, 그 중 1명 이상을 전담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② 분원1의 경우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이므로 1명 이상을 지정하여야 하며, ③ 분원2에는 연구활동종사자가 10명 미만이므로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 의무는 없으나 기관 예산 및 위험정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원2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원에서 연구실안전법에 관한 의무이행사항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에 따른 제출 서류

**Q**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및 신고 시 학력 및 전공을 증명하는 서류로 졸업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별도의 정형화된 양식이 있나요?

**A**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해당기간 동안의 경력증명서, 업무분장표 및 기관 내부결재서류가 있습니다. 경력증명서에는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가 필수로 명시되어야 하며, 기관내부 결재서류는 경력기간 및 연구실안전관리 업무 내용과 함께 연구주체의 장의 결재가 있는 문서이어야 합니다. 업무분장표는 기관 내부의 공증된 자료로서 연구실안전관리 업무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내용에는 연구실 안전교육, 실험 폐기물관리,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연구실 안전점검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별도의 정형화된 양식은 없으므로 기관 내부문건의 양식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보고

**Q** 기관의 연구활동종사자가 변경되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추가로 지정해야하는 경우, 즉 2명에서 3명으로 증원을 해야 하는 사유 발생 시 선임해야하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A** 기관 자체적으로 연구활동종사자 증원을 계획할 때 안전환경관리자에 관한 사항도 고려하여 미리 예산, 정원 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시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에 대한 별도의 기간은 없으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선임·지정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변경 보고

**Q**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변경 시 보고를 해야 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신 경우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같음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업부설연구소의 안전환경관리자 지정

**Q** 회사 총 인원은 65명 기업부설연구소 인원은 총 14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받고 있으면 연구실안전법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연구실안전법 상 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A** 기업부설연구소 내 총 연구활동종사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실안전법 적용대상이지만, 연구활동종사자가 50명 미만인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법 제10조,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나머지 조항은 이행). 따라서 해당 기관의 경우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Q** 저희 회사는 전체 근로자 200여명으로 제조업을 하고 있으며, 부설연구소에도 60여명의 연구활동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 ①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기존 제조시설 안전관리자와 겸직이 가능한지 아니면 연구소 전담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나요?
- ② 기존 안전관리 위탁업체와 업무 진행 중인데 연구소도 위탁해도 되나요?
- ③ 문의사항 ①번의 사항이 가능하다면, 1명의 대표자가 2개 사업장 운용시 A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B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가요?

**A** 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기업부설연구소에서는 별도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안전관리자가 부설연구소까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1항(별표 3)에 근거하여 사업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②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 1은 타 안전관리법들과 중복 적용되는 사항에 대한 같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장의 중복규제를 일부 완화하기 위한 규정인 바, 연구실 내 안전확보를 위하여 타법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뤄졌을 때에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을 중복으로 이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마련한 조항입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를 적용받아 안전관리자를 선임(위탁기관 포함)하는 경우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선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5항을 적용받는 기관인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별도의 업무 인력을 두어 연구실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③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의 조건에 충족된다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장을 한명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사항은 고용노동부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 3.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대리자 지정

#### 대리자 지정 기준

**Q** 코로나19 감염병 지침에 따라 재택근무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대리자 지정을 하여야 하나요?

**A**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재택근무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리자 선임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가격리(밀접 접촉자, 감염자 등)시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Q** 1일 미만의 출장(외출)도 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나요?

**A**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대리자 지정은 출장, 교육, 연가 등에 따라 근무지를 이탈하여 비상시 신속한 복귀 및 업무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대리자 지정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의 부담을 감안하여 1일 이내의 출장에 대해서는 대리자 지정여부를 별도 확인하고 있지 않으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대리자를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자 지정 가능 인력

**Q** 연구활동종사자 1천명 미만인 기관은 안전환경관리자 1명 이상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법적 지정인원(1명 이상)을 초과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1명이 휴가로 부재중인 경우,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대행할 수 있나요?

**A** 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최소기준 충족 범위 내에서 연구실안전관리자의 대리자로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Q** 연구활동종사자 3천명 미만의 기관으로 2명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운영하고 있는데, 1명이 휴가로 부재중인 경우에 다른 관리자가 대행할 수 있나요?

**A** 3천명 미만의 기관은 2명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므로 상호 대리자 지정이 불가하며,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리자 자격요건을 충족한 인원을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자 지정방법**

**Q**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은 어떻게 하나요?

**A**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공백 발생 이전에 대리자 지정의 사유 및 기간 등에 관한 내용을 문서나 시스템을 통해 연구주체의 장(또는 각 기관 위임전결규정상 해당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대리자 지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별도로 보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제11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Q**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는 모든 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에서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하나요?

**A**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은 연구실안전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대학·연구기관 등에서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연 1회이상 개최하여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등 연구실 안전관리 주요사항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적용받는 연구실은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별도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기업부설연구소로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으려 합니다.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는 당해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활동종사자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수가 총 6명이라면, 위원 중 3명은 연구활동종사자여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A**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경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대체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시되, 연구실안전에 관한 사항을 논의 할 수 있는 연구실 책임자를 안전보건위원회에 포함시켜 연구실안전도 같이 관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적용면제 여부**

**Q** 기업부설연구소입니다. '20. 12. 10.부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이 의무 시행되도록 개정되었는데,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 중이었음에도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필수로 구성·운영하여야 하나요?

**A**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를 적용받는 연구실은 연구실안전법 제11조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여러 위원회를 중복으로 운영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을 막기 위함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도 연구실 안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원과 분원의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통합 운영**

**Q** 본원과 분원의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A** 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가 본원과 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적용받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실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이 면제되나, 본원 또는 분원 중 위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 연구실이 있는 경우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 1]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Chapter

III

## 연구실 안전조치

1.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제12조)
2.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제13조~제16조)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제17조)
4.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제19조)
5. 연구실 안전 교육·훈련(제20조)
6. 건강·검진(제21조)
7. 연구실 안전관리비(제22조)



Chapter

III

연구실 안전조치



1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제12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이행여부

**Q** 현재 연구원은 80명, 생산직이 600명 정도 되는 기업부설연구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있는데 별도로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을 만들어야 하나요?

**A**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법 제1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연구실 안전에 관한 사항도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실 안전관리규정과 교내 안전관리규정의 통합 운영 가능 여부

**Q** 대학입니다. 연구실 안전관리규정과 교내 안전관리규정이 각각 제정되어 있습니다. 2개의 규정을 통합하여 캠퍼스 안전관리규정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A**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을 산업안전·가스 및 원자력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통합의 범위는 연구실 안전확보에 관련되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들입니다. 따라서 교내 안전관리규정의 내용이 연구실 안전관리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교통, 시설물, 성폭력 등)이라면 연구실안전관리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결재

**Q** 1.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안전관리규정에 대하여 연구소 최고 책임자인 연구소장까지 결재를 받아 두었는데 대표이사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나요?  
2. 안전관리규정을 안전관리위원회 통과 후 게시 및 보관하면 되는지? 아니면 상기 1번의 결재란에 결재 후 게시 및 보관해야 하나요?

**A** 1. 법 제12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연구기관의 대표자)이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연구주체의 장인 연구소장의 결재를 받으시면 됩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총장이나 기관장의 결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연구주체의 장은 작성한 안전관리규정을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연구활동종사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합니다.  
2. 법 제11조제2항에 의하면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규정은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구주체의 장의 결재 후 게시·보관하여야 합니다.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게시방법

**Q** 안전관리규정 게시방법이 궁금합니다. 전산자료로 게시하여도 무방한가요?

**A** 연구실안전법 제1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제1항에 의거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므로, 홈페이지 게시뿐만 아니라 안전관리규정을 인쇄해서서 각 연구실에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회람

**Q**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관리규정을 알리도록 하는데, 서명부를 작성하여 회람여부에 대한 증빙을 하여 보관하여야 하나요?

**A** 연구실안전법에서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회람에 대한 증빙자료 보관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2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제13조~제16조)

### 2.1. 점검·진단 대상 및 실시 주체

#### ☞ 컴퓨터를 사용하는 연구실의 안전점검 대상여부

**Q** 연구실이 일반 사무실과 같이 컴퓨터 등 사무용 기기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구실안전법에서 정한 안전점검을 이행해야 하나요?

**A**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저위험연구실의 경우 일상점검은 주 1회 실시하며, 정기점검은 면제하고 있습니다. 저위험연구실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화학물질, 가스 생물체, 세포 등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한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연구실 등을 제외한 연구실을 의미합니다. 단순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만 사용하는 연구실의 경우 저위험연구실로 구분될 수 있으니 해당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저위험연구실 해당유무를 판단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Q** 법에 지정된 물질(유해화학물질, 독성가스 등)을 보유한 것만으로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나요? 소량의 물질을 이용하여 한 명의 학생이 몇 번의 실습을 하는데도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하나요?

**A**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의 유해·위험물질 등을 사용하는 연구실을 대상으로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연구실안전법에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취급량이나 취급빈도에 대한 기준이나 정의가 없으므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규정하고 있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은 모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Q** 연구활동 수행 중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접착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연구실은 고위험 연구실로 판단하여야 하나요?

**A**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급하는 접착제가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농도 및 함유량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을 판단하고 있으므로, 해당 접착제의 유해화학물질 여부를 확인하시어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대상 여부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기관에서 직접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가능 여부

**Q**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본인이 직접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나요?

**A**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 4(안전점검), 별표 5(정밀안전진단)의 인적·물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6호) 제5조(실시자의 의무) 등을 준수하여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의뢰 가능 여부

**Q** 기업부설연구소입니다. 정기점검을 사내인력 및 장비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려고 했으나 '20년 법 개정에 따라 안전점검의 인적자격 및 물적 장비 요건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시행령 별표 3에서 요구하는 대부분의 인력 및 장비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산업위생 분야의 인적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는 경우 자체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고 대행기관에 의뢰해야 하나요?

**A** 연구실안전법에서는 시행령 별표 4의 인력 및 장비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만 정기점검을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접실시 요건이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 법 제1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대행기관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 현황은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www.labs.go.kr)을 통해 공지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2 점검·진단 실시 기준

### ☞ 일상점검표

**Q** 연구실책임자는 일상점검표를 매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하나요? 또한, 일상점검표는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요?

**A** 일상점검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 상태 등을 직접 눈으로 매일 확인하는 점검으로써,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공간인 연구실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2021-106호) 제6조제3항에 따라 일상점검 결과기록 및 미비사항을 매일 확인 조치하고, 지시사항을 점검일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지침 제17조(서류의 보존)에 따라 1년 이상 보존·관리해야 합니다.

**Q** 표준 일상점검표가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표준 일상점검표를 수정하여 사용해도 되는지요?

**A** 연구실안전법에서 정하는 별도의 표준 양식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고시 제2021-106호) 별표 2(일상점검 실시 내용)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점검 실시내용은 연구실의 환경(연구분야, 시설 등)에 맞게 추가 또는 일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의 항목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연구실책임자는 일상점검 결과기록 및 미비사항을 매일 확인 조치하고, 지시사항을 점검일지에 기록하여 안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정기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사항도 동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정기점검의 실시 시기

**Q** 저희 연구소는 '20년 9월에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나, '20년 11월에 신규 lab을 추가로 설치 하였습니다. 이 경우 새로 설치한 연구실의 정기점검 실시시기는 언제인가요?

**A**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나, 해당 연도 정기점검 실시 후 추가로 설치된 연구실이라면 설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면 됩니다. 아울러 매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특별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안전에 관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

**Q**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보고 해야 하나요? 보고를 한다면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A** 2011년 9월 개정 전 법에 의하면,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이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연구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그 결함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한 중대한 결함이 없다면 보고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단, 실시결과는 기관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표).

또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보고 시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소속 기관, 실험실명 등을 기재하고 중대한 결함의 사유 및 예방대책 등을 적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문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보존기한

**Q**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였을 때 결과보고서의 보존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고시 제2021-106호)」 제17조(서류의 보존)에 따라 일상점검표는 1년,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노출도평가 결과보고서는 3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MSDS 전자보관 여부

**Q**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물질의 취급·보관장소 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화학물질을 보관 및 취급하는 연구실의 경우, 출력물로 비치할 경우 일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하는 것은 어떠한가요?

**A**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고시 제2021-106호) 제3조(자료 및 기록 유지)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기관 홈페이지에 링크한 경우 기록 유지(게시 및 비치)한 것으로 같음하고 있어, 전산장비를 활용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비치 및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취급시약 경고표지 규정

**Q** 실험실의 안전을 위해 취급시약에 관련된 취급주의 표시를 부착하려고 하는데 규정하고 있는 모양이나 표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자체적으로 취급주의라는 표시를 만들어서 부착해도 무관한가요?

**A** 화학물질의 표시는 최근 전 세계적인 규격(GHS, REACH 등)으로 통일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MSDS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취급시약 등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지 방법 및 기재항목) 등에 따라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GHS MSDS 경로찾기 : 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http://www.msds.kosha.or.kr>) → 경고표지 작성 → 해당물질 GHS분류 → 그림문자 → 끝.

#### GHS 경고표지 그림문자



### 증류수의 경고표지 부착여부

**Q** 증류수도 경고표지 부착 대상인가요?

**A** 증류수는 현재 유해성 및 위험성이 분류되지 아니한 물질로써, 경고표지 부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연구활동종사자의 취급 주의를 위하여 보관용기 등에 증류수임을 알 수 있는 표기(표시)를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2.3. 기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관련 기준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작성 주체

**Q** 연구실안전법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지침을 저희 회사에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A** 법 제13조에서 말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6호(「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21. 12. 31. 일부개정)를 의미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고시를 바탕으로 기관 내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점검·진단 지적사항 개선 계획

**Q**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후 개선사항이 많아 한 번에 처리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진행하여도 되나요?

**A** 점검 및 진단에 대한 개선사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개선 진행사항을 수시로 기록하여 유지함으로써 개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같음여부

**Q** 정밀안전진단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정기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해에는 정밀안전진단으로 정기점검을 대체할 수 있나요?

**A**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6호)」 제10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실에 대해서는 해당연도에 한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동 고시 별표 4의 실시내용이 정기점검 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연도 정기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같음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안전등급 산정 방법 등**

**Q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점검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21년 12월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객관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6호)을 개정하여 점검항목 및 안전등급 산정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기존 체크리스트 내 불분명하였던 용어 및 표현을 수정하고, 평가를 세분화('주의' 신설) 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분야별 지적건수를 점수화 하여 연구실 안전등급 산출 기준(Matrix)을 마련하였습니다. 체크리스트별 각 항목별 위험도(중요도)에 따라 A그룹(필수 점검항목)과 B그룹(일반 점검항목)으로 그룹화 하고, 안전등급 산정방법은 A그룹 점검결과에 따라 1차적으로 등급을 산정하고, B그룹 점검결과를 1차 등급에 합산하여 최종 등급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 7 연구실안전등급 산정기준 참고

〈연구실 정기점검 체크리스트 항목 변경 예시(지침 별표 3)〉

| 기존    |                                    |                          |                          |                          | 현행 |                             |                          |                          |                          |                          |
|-------|------------------------------------|--------------------------|--------------------------|--------------------------|----|-----------------------------|--------------------------|--------------------------|--------------------------|--------------------------|
| 분야    | 점검 항목                              | 양호                       | 불량                       | 해당 없음                    | 그룹 | 점검 항목                       | 양호                       | 주의                       | 불량                       | 해당 없음                    |
| 일반 분야 | 일상점검 실시여부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A  | 연구실 내 취침, 취사, 흡연 행위 여부      | <input type="checkbox"/> | NA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사고발생 대응절차 수립여부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사고발생 비상대응 방안 수립 및 게시여부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NA                       | <input type="checkbox"/> |
|       | 연구실 내 취침, 취사, 흡연 행위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연구실 내 건축물 훼손상태 (천정파손, 누수 등)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연구실 내 안전시설 조성여부 (천정파손, 누수, 창문파손 등)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B  | 일상점검 실시여부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비치, 공표, 변경 사항 게시여부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비치 또는 게시여부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NA                       | <input type="checkbox"/>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제17조)**

**3.1. 대행기관 등록 요건 및 방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요건(인력)**

**Q 대행기관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려는 자의 경력인정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은 시행령 별표 6, 별표 7에 따라 해당 분야의 자격증 취득 후, 관련 안전분야에 일정 기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력증명서 상 수행직무가 명시되어야 하며, 기관 특수 사정으로 인해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운영 가이드라인' [별표 1]의 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 인력요건 중 경력에 대해 근무했던 회사의 부도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등록 서류의 발급 유효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A** 부도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서발행 폐업 사실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경력을 증명해줄 보증인의 신분증, 보증인 근무확인서, 신청인 신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행기관 기술인력 등록 시 제출서류는 제출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 등록요건 및 제출서류에 관한 자세한 문의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T. 043-240-6417)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요건(장비)**

**Q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 시 분야별 장비를 일부 갖추지 못한 경우 임대하여 사용해도 되나요? 또한, 새로 구입하지 않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장비로 등록할 수 있나요?**

**A**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대행기관 등록요건(인적 자격, 물적 장비요건)은 최소한의 요건을 나열한 것입니다. 대행기관 등록 시 장비 임대의 경우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추후에 장비의 임대 등이 발견되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대행기관 등록 시 각 분야별 장비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 1에 따라 12개월 이내에 검·교정을 받거나 신규로 구입한 장비이어야 합니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방법**

**Q** 대행기관 신규 등록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대행기관 등록신청서)을 작성, 기타 제반서류(기술인력 자격, 경력증명서 및 장비 세금계산서, 검교정서 등)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www.labs.go.kr) 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제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되며, 등록요건에 대한 서류검토 후 현장실사(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등록요건 및 제출서류에 관한 문의는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연구실정책팀(T. 043-240-641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현황**

**Q**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관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A** 등록된 대행기관에 관한 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나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www.lab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등록된 기관(2023년 4월 기준)은 16개 기관입니다. 다만, 대행기관 등록현황은 수시로 변경(등록, 취소)되므로 대행을 의뢰하고자 하는 연구주체의 장은 점검 시점에 등록된 기관을 반드시 확인 후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2. 대행업무 수행 기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업 수행 시 주의사항**

**Q** 등록 요건 외 대행업을 실제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A** 대행기관이 각 대학·연구기관에 점검·진단 대행업을 수행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인원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등록 인력 또는 자격요건이 불충분한 인력이 대행업을 수행하는 등 부정적 운영사태가 발각되었을 경우에는 등록취소 등 제재조치가 부과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행기관이 점검·진단 대행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대상 기관의 연구분야\*에 적합한 점검·진단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점검·진단반을 구성해야 합니다.

\* 연구분야(투입인력 분야) : 화학/화공(화공 및 위험물관리), 전기/전자(전기), 기계/물리(기계, 일반안전), 의학/생물(산업위생 및 생물), 건축/환경(일반안전, 산업위생), 에너지/자원(일반안전, 화공 및 위험물 관리, 산업위생) 등 영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연구기관에서 사전 제공한 자료에 의함

아울러, 준수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기준(1개 연구실 최소 투입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성기준         | 구성방법  |
|--------------|---|
| 3개 분야, 3명 이상 | 1) 해당 연구실의 연구분야에 적합한 기술인력 1명 이상<br>2) 일반안전, 산업위생분야 기술인력 중 1명 이상<br>3) 1), 2)에 해당 되지 않은 분야의 기술인력 중 1명 이상<br>※ 기술사·박사는 직무 및 전공분야에 적합하게 점검·진단반 참여<br>※ 위 인력기준 외의 추가 보조인원은 등록된 인력 외에도 참여 가능(단, 보조인원으로서 참여 가능) |

또한, 대행기관이 대행업 수행 시, 1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최대 연구실 수는 40개이며, 연구실 유형분류에 따른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연구실   | 연구실 수  |
|----|---|--------|
| 1  | 화학/화공, 의학/생물, 환경, 에너지/자원 분야                         | 최대 30개 |
| 2  | 전기/전자, 기계/물리, 건축, 기타분야                              | 최대 40개 |
| 3  | 1번 및 2번 연구실 유형을 혼합하여 실시하며 1번에 따른 연구실 유형이 15개 이상일 경우 | 최대 30개 |
| 4  | 1번 및 2번 연구실 유형을 혼합하여 실시하며 1번에 따른 연구실 유형이 15개 미만일 경우 | 최대 40개 |

1개 연구실의 기준은 20평(66㎡) 내외로 정하며, 40평(132㎡)을 초과한 경우 2개 연구실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투입인력은 결과보고서 작성 인원 등을 제외한 순수 점검·진단 실시인원을 의미하며, 위 최소인력 외 추가인력에 한해서는 미등록자의 점검·진단 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단, 직접적인 점검·진단활동이 아닌 단순 보조업무에 한함). 세부적인 사항은 '22년 3월 배포한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운영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교육**

**Q**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교육은 언제,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A** 대행기관에 신규 등록된 기술인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교육기관인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 신규교육을 6개월 이내에 1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규교육을 이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매 2년 전후 6개월 이내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4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제19조)

###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관련 규정

**Q**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하고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절차나 지침은 있나요?

**A**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 분석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9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www.labs.go.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한 가이드북 및 프로그램(Tool)은 국가연구안전 정보시스템(www.lab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대상 및 기준

**Q**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기업부설연구소입니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하고 있는 경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시행령 별표 1 제3호 마목에 따르면 연구활동 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같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공정별(생산, 품질관리 등)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시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연구활동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 안전과 관련하여 어떤 절차를 밟아 연구활동을 시작해야 하는 건가요? 연구실 신고도 별도로 해야 하나요?

**A** 현재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각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활동을 시작하려는 연구실에서는 해당 기관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사전에 이를 통보하고 해당 연구내용에 필요한 적절한 안전이행 사항(설치·운영 기준, 교육, 보험, 건강검진 등)을 지도·조언 받은 후 연구활동을 시작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고위험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 시작 전 연구실 및 연구활동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관리하기 위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연구실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대한 별도의 신고사항은 없습니다.

## 5 연구실 안전 교육·훈련(제20조)

### 5.1. 교육·훈련 대상 및 수행 주체

#### ☞ 연구실 안전교육 대상자

**Q** '연구주체의 장'도 연구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

**A** 이 법 제20조(교육·훈련)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 교육대상 연구활동종사자에는 학부생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험실습 수업을 받지 않는 공대생을 교육대상에 포함해야 하나요?

**A** 연구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실험·실습 수업도 받지 않는 공대생은 법적 의무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학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복수전공, (부)전공, 단순 수강 등을 통해 실험실습 수업을 받으며, 학기별 수강인원도 다르므로 연구실(실험실습실)을 출입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교육대상을 산정하여 교육을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 근로자의 교육대상 여부

**Q** 정기교육, 특별안전교육 대상자는 근로자만 해당되는지?

**A** 정기교육, 특별안전교육 대상자에는 근로자와 비근로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각 연구실의 학부생, 대학원생 등 비근로자를 포함하여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활동종사자(법 제2조제8호)는 지정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실안전 교육훈련

**Q**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며, 연구인원은 현재 13명입니다. 업종 특성상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교육훈련 규정은 적용 제외인데, 이 법에서도 교육 훈련 제외대상인가요?

**A** 「산업안전보건법」적용대상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연구실안전법에 의해 보호받도록 해야 하고, 해당 연구실은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을 위해 설치한 연구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는 관련 교육·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에서 '신청분야'가 과학기술이 아닌 서비스(관련 연구분야 : 운수, 부동산 및 임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실안전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교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이수

**Q**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도의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교육을 추가 이수하여야 하나요?

**A**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적용받는 연구실은 연구실안전법 제20조(교육·훈련)가 면제되므로,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추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교육

**Q** 만일 외부기관 연구원들이 연구소를 이용하기 위해 상주하거나 수시로 출입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교육은 누가 실시해야 하나요?

**A** 1차적으로 해당 연구원이 소속된 기관(A)의 연구주체의 장이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부업체의 연구주체의 장(A)은 이들에게 직접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또는 이들이 상주하거나 수시로 출입하는 연구기관(B)에 의뢰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연구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연구기관(B)은 이들이 사용하는 연구실 공간의 안전관리와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자체(B) 안전관리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 ☞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기관

**Q**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대학원생입니다. 연구실 안전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수강하여야 하나요?

**A** 연구실안전법 제2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기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또는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등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교육 등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는 연구실 안전교육을 총괄·기획하는 기관으로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집체교육(법적교육, 전문·특별교육 등), 사이버(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신규, 보수과정)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 교육(신규, 보수과정), 연구활동종사자 찾아가는 교육, 연구실책임자 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 등이 있으며, 사이버 교육은 공통분야, 전문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교육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및 기타 민간기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니,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실 안전교육에 관한 정보와 자료는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edu.labs.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집합·사이버 교육기관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edu.labs.go.kr, 집합·사이버 교육) 등

**Q**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를 보니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은 어디인가요?

**A**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2021-29호) 제2호 마목에 따라 현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교육기관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입니다. 이곳의 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하여 교육 이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5.2 교육·훈련 이수기준 및 증빙방법

### 안전교육 과정(커리큘럼)의 종류

**Q** 안전교육 과정(커리큘럼)의 종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A**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    | ⑭ 가스안전                    |
| ② 연구실 기본 안전수칙           | ⑮ 생물안전                    |
| ③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⑯ 화재, 소방 안전               |
| ④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 및 사용방법 | ⑰ 기계안전                    |
| ⑤ 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    | ⑱ 방사선·레이저 안전              |
| ⑥ 사고 유형별 대응 및 응급처치      | ⑲ LMO, GMO 안전             |
| ⑦ 개인보호구의 올바른 사용법        | ⑳ 연구실과 인간공학               |
| ⑧ MSDS/GHS의 이해          | ㉑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
| ⑨ 연구활동종사자 건강영향 및 건강진단   | ㉒ 우수연구실 인증제               |
| ⑩ 안전진단 실례 및 분석          | ㉓ 보험 및 사고보상               |
| ⑪ 안전의식                  | ㉔ 심폐소생물(CPR) 및 AED 사용법 실습 |
| ⑫ 화공안전(화학물질)            | ㉕ 안전표지(라벨), 표어, 포스터       |
| ⑬ 전기안전                  | ㉖ 안전한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         |

### 연구활동종사자 교육이수 기준

**Q** 연구활동종사자 신규채용 교육을 8시간 이수하였습니다. 이 때 정기교육도 이수해야 하나요?

**A**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신규교육·훈련을 이수한 연구활동종사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해당 반기 또는 연도(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로 한정)에 한해 정기교육의 모두(반기 3시간, 6시간 또는 연간3시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를 받는 기간은 신규로 연구활동에 참여한 반기 또는 연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Q** 연구활동종사자가 퇴사 후 동일기관에 재채용 된 경우 신규교육을 다시 이수하여야 하나요?

**A**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서이동 또는 퇴사 후 재임용(채용)시 기존 교육실적 인정은 1) 동일 연구분야에서 기존 연구를 수행하며 2) 퇴사 후 재임용(채용) 기간이 교육실적 인정기간(교육실적 인정기간(1년)) 내 이루어진 경우 가능합니다.

**Q** 대학에 연구활동종사자가 휴학이나 군입대 후 복학한 경우 어떤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후 휴학이나 군입대 등으로 교육 공백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신규교육부터 다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활동종사자 교육증빙 서류

**Q** 기관에서 연구실안전 교육훈련에 대한 증빙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A** 기관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또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온라인 교육이나 타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이수증(교육실시기관, 교육일시, 교육시간, 교육명 등 포함)을 첨부하시고, 기관 자체적인 교육 시에는 교육실시 공문, 교육자료, 교육이수자 서명, 교육실시 사진자료 등 증빙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5.3. 기타 교육훈련 기준

#### 안전교육 미이수자 제재방법

**Q** 안전교육 미이수자에게 조치를 해야 한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A** 법에 안전교육 미이수자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만 사고발생 시 연구주체의 장, 연구실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과태료). 아래의 사항은 기관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 1) 졸업논문 자격시험 제출서류에 안전교육 수료증 사본 포함
- 2) 연구실 출입제한
- 3) 성적열람 제한

#### 교육 미실시 과태료 부과

**Q**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장검사, 사고조사 및 실태조사에 따라 교육 미이수자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현장검사 및 사고조사 시 연구실 안전교육을 미이수한 대상자를 포함하여 교육 안내 및 독력을 실시한 기록이 확인될 경우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법 제33조 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부적절한 방법 등으로 교육 대상자를 누락하여 안내(독력)한 것으로 인해 미실시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6. 건강검진(제11조)

#### 건강검진 대상

**Q** 건강검진 대상에 연구활동종사자인 학부생도 포함되나요?

**A** 연구실안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포함)를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포함)에 대하여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임시·단시간으로 해당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포함)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일반건강검진(문진, 혈압, 흉부방사선 촬영 등)도 병행하여야 합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건강검진 관련

**Q**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일반건강검진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일반건강검진에 해당하는 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일반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이때 특수검진도 1년에 1회이상 해야하나요?
- ②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할 때, 연구활동종사자를 ‘사무직’에 포함하여 분류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그렇게 되면 건강검진 실시 주기를 연구실안전법(1년 1회 이상)과 국민건강보험법(2년 1회 이상) 중 어느법에 맞춰서 실시해야 하나요?

**A** ① 연구실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유해물질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일반건강검진은 1년에 1회 이상,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른 주기(6개월~2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② 위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유해인자(유해물질)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일반 건강검진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인정하고는 있으나, 2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해에는 자체적으로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사무직"의 정의는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13호)을 따릅니다. 동 기준에서 "사무직"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에 따른다고 되어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에는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실험, 연구 등을 하는 연구활동 종사자는 '사무직'으로 분류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 종합검진으로 일반건강검진 대체**

**Q** 종합검진으로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종합검진으로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A** 종합검진의 검사항목이 일반건강검진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한다면 적합하게 실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검진은 병원 등 검진기관에서 일반건강검진의 검진항목 외 추가 진단항목으로 구성된 상품으로,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건강검진 비용을 집행할 경우 일반건강검진에 해당하는 검사비용만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부과**

**Q**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장검사, 사고조사에 따라 건강검진 미실시자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현장검사 및 사고조사 시 연구실 건강검진을 미실시한 대상자를 포함하여 검진 안내 및 독려를 실시한 기록이 확인될 경우 검진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법 제33조 제5호에 따른 시정명령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 또는 부적절한 방법 등으로 검진 대상자를 누락하여 안내(독려)한 것으로 인해 미실시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7 연구실안전관리비(제22조)**

**7.1. 연구실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및 관리**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안전관리비 계상**

**Q**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업종만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되어있는데(제조업 제외) 기업부설연구소도(제조업) 안전관리비 계상을 해야 하나요?

**A**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별도의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구실안전법을 적용받는 과학기술분야 기업부설연구소는 해당 연구실에 필요한 안전·유지관리비를 계상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계상내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Q**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예산 책정 시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안전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나요?

**A**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안전관련 예산의 배정)에 의거해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대학, 연구기관과 같이 최소 안전관리비 책정 비율(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구실안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모든 법 대상기관은 매년 연구실에 필요한 안전관련 예산을 배정·집행하여야 하므로, 기업부설연구소 또한 최소 안전관리 책정비율과 관계없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비용 등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진행하여야 합니다.

**☞ 타 기관 과제 수행시 안전관리 예산 반영 여부**

**Q**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외의 타 부처 과제 수행 시에도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정하는 안전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있나요?

**A** 연구실안전법 제22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비의 출처에 관계없이 모든 과학기술 분야 연구비 책정 시에는 안전관련 예산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 연구과제 없을 시 예산반영 여부

**Q 연구과제 인건비에서만 예산을 반영하면 연구과제가 없을 때는 안전관련 예산 반영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대학·연구기관 등은 연구과제 인건비에서 책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비 이외에 연구실안전법 제2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7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에 따라 매년 소관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하고 그 내역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과제가 없더라도 기관 운영비 등 기관 자체예산의 일부를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편성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연구주체의 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연도 계상내역 및 전년도 사용내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 예산 관리

**Q 안전관리비 예산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나요?**

**A** 별도 계정에 의한 관리여부는 기관의 실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단, 1) 대학·연구기관 등은 소관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2)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 시 안전관련 예산을 반드시 편성·집행하여야 하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사례** ○○대학교의 경우 안전관리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본예산(교비: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과제별 안전관리비(간접비: 연구과제수행을 위한 인건비의 2%)를 별도 계정으로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Q 연구실안전관리를 실시하는 전담부서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과제에서 계상된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일괄 이관받아서 집행가능한가요?**

**A** 연구과제로부터 계상된 연구실안전관리비는 기관장의 결정 하에 기관차원에서 간접비로 흡수하여 연구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일괄 이관 받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계처리에 관한 것은 일반적인 간접비 처리방식에 따르면 됩니다.

**사례** ○○대학교 사례 : 현재 ○○대학교의 경우 연구과제 수행 주관부서인 산학협력단 연구지원관리실과 협조하여 수행 연구과제별로 총 인건비의 2%(○○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2%로 규정함)를 편성토록 하고 편성된 안전관리비를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사업비"로 재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7.2 연구실안전관리비 사용 용도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범위

**Q** 저희 기관은 매년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책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항목들이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 ① 법정 최소 기준을 초과하여 지정된 전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인건비 ②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 수당 ③ 안전학회 참가비 ④ 연구실 실험대 및 캐비닛 ⑤ 안전교육 참여 홍보물 제작

**A** 연구실안전법 제22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매년 해당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은 지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그 사용용도는 시행령 제17조 및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8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험료, 교육훈련비, 건강검진비, 안전설비의 설치·유지보수비, 보호장비 구입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비용, 안전관련 회의비 및 출장비 등에 해당 됩니다.

- ▶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 항목 : ①, ③, ⑤
- ▶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안 되는 항목 : ②, ④

※ '법정 최소 기준을 초과하여 지정된 전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인건비'란 법 제10조제1항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최소 지정 기준을 초과하여 지정된 자가 시행령 제8조제1항의 전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의 인건비를 의미합니다.

※※ 연구실 실험대 및 캐비닛은 연구를 위한 필수 장비에 해당되므로 연구장비·재료비 등으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전관리비는 시약장, 흡후드, 비상세안기, 생물안전작업대와 같은 안전설비의 설치·유지에 사용

**Q**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호 및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제3조제4호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항목에 따라 지출 가능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연구실 안전환경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항목은 연구실험장치의 교체, 시설공사 및 개조비용 등을 제외하고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집행하는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연구실 유해인자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단순 연구장비의 성능향상(열선 등 전기부품, 가스 레귤레이터, 컴퓨터 부품 등 교체), 연구실 안전확보에 관계없는 공간의 설치·재배치(사무공간 파티션, 탕비실 등)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Q 화재감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모니터 구매가 가능한가요?**

**A**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통해 화재감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므로 화재감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모니터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화재감지 모니터링 시스템과 관련이 없는 단순 모니터 구매(예. 사무용, 연구용) 등은 목적외 사용으로 지적받을 수 있으나 집행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전기설비 중 노후화된 분전반 교체가 가능한가요?**

**A** 노후화 등 기타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전기설비로 인해 전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통해 분전반의 교체 및 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 연구장비 도입으로 전기 증설 등에 따른 전기공사는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없으며 해당 기관의 시설비용으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Q 팔토시, 클러 조끼(냉방조끼), 선풍기, 점퍼 등 구매가 가능한가요?**

**A**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는 연구실 유해인자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거나 연구실 안전환경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집행 가능합니다. 질의하신 팔토시, 클러 조끼, 선풍기, 점퍼 등은 복리·후생 증진 등 연구자의 편의를 위한 사항으로 연구실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자 보호를 위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구실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과 관계없는 근무여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과 관련된 무분별한 집행을 방지하고자, 연구실 안전관리비 지침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적용·운영 중

**Q 연구실안전관리비로 연구실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생물체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 보호를 위한 공기청정기 구매가 가능한가요?**

**A** 연구실 내 화학물질, 생물체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기청정기는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제3조제4호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가정용 공기청정기는 가정·사무용으로 미세먼지 등 비점오염원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므로 연구실의 안전환경 개선에 효과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화학물질, 생물체 등에 대한 저감능력이 확보된 산업용 공기정화장치 설치 또는 연구실 유해인자의 원천적 차단을 위한 후드, 배출설비의 설치·개선을 권고드립니다.

**Key Point**

**연구실 안전관리비 세부 집행기준 안내**

(※ 항목은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제3조의 각 호 준용)

| 항목   | 집행 가능항목   | 집행 불가항목  |
|--|---|--|
| <b>1. 보험료</b><br>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상내용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상금액을 보장하는 보험료 | • 연구실안전법의 보상금액을 보장하는 보험<br>• 대학·연구기관에서 법적 준수여부에 관계없이 추가(별도)로 가입하는 상해보험 등  | • 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br>• 대학·연구기관에서 법적 준수여부에 관계없이 추가(별도)로 가입하는 상해보험 등      |
| <b>2. 안전관련 자료의 확보·전파 비용 및 교육·훈련비 등 안전문화 확산</b><br>가. 규칙 제10조제2항 등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 비용                                 | •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 관리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교육비<br>•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비용  | •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 법정교육 비용(산업안전보건법, 원자력안전법 등)<br>• 자격 시험 응시료                                    |
| 나.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비용 (정기, 신규채용, 연구내용 변경시)  | •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교육비용(집체, 온라인 교육비용)   | • 다른 법령에 따른 종사자 법정교육 비용 (산업안전보건법, 원자력안전법 등)  |
| 다. 연구실 안전수칙·교육교재·안전 관련 도서·학술지 등 연구실 안전 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의 구입·제작 비용 및 그 홍보·전파 등의 비용  | • 연구실 안전 관련 서적, 교재 구입 비용<br>• 연구실 안전 관련 교육 콘텐츠 제작 비용 - 동영상 교재 제작비(용역)<br>• 연구실 안전 관련 자료 인쇄 및 책자 발간 비용<br>• 연구실 안전 관련 홍보(광고, 문자발송 등) 비용 - 사고전파 SMS 비용, 통신비(요금) | • 연구실 안전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위한 영상장비(캠코더, 마이크, 카메라 등) 및 스튜디오 구축 비용<br>• 안전문자 발송을 위한 통신기기(스마트폰 등) 구매 비용 |
| 라. 연구실 안전 관련 행사비 및 포상비   | • 연구실 안전 행사 개최 비용(대관, 다대비 등)<br>- 회의장 대관료<br>• 연구실 안전 포상 비용(상품권, 상품, 상패 등)<br>- 포상비(현금, 상품권 등)  | • 매달 지급되는 급여성 포상 비용(안전 인센티브)<br>• 안전담당 직원의 직급 보조비(위험수당 등)                                      |

| 항목   | 집행 가능항목   | 집행 불가항목   |
|--|---|---|
| <b>3. 건강검진</b><br>가. 규칙 제11조에 따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       | •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의 일반·특수건강검진 비용<br>※ 건강검진이 아닌, 연구자의 진료, 처치 비용 제외   | • 다른 법령에 따른 종사자 법정진단 비용 (산업안전보건법, 원자력안전법 등)<br>• 일반·특수건강검진 항목을 초과하는 종합검진(병원에서 별도로 판매하는 상품) 비용<br>• 코로나 PCR 검사비, 진단키트 구매, 음성확인서 발급비용<br>• 진단서, 건강확인서 발급 비용 |
| <b>4.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b><br>가.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비용. 다만, 연구실험장치의 교체, 시설공사 및 개조비용 등은 제외 | • 연구실안전법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설비,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검지·감지장치, 방호장치 및 그 설치비용<br>• 가스·누액 감지기, 화재 경보기 등 검·교정 비용 | • 연구장비·시설의 성능 유지 및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보수하는 비용<br>※ 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중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에 해당하는 항목<br>• 실험대, 싱크대 등 연구기반시설 구매 비용<br>• 파라솔, 벤치 등 편의시설 설치·보수 비용            |
| 나. 연구실안전환경을 위한 시설·설비의 재배치에 필요한 비용  | • 연구공간과 사무공간 분리를 위한 리모델링 비용<br>• 연구시설·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해 설치·보수·이동·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                                  | • 대학·연구기관의 조직 개편 등에 따른 공간 재배치(사무공간 파티션 설치, 쪼개기 등)<br>• 안전확보에 관계 없는 공간 설치(휴게실, 탕비실)  |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설비 설치·유지 및 보수 항목 사례〉

| 항목     | 사례   | 인정여부 |
|--------|--|------|
| 주요 구조부 | 연구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연구실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재배치 공사       | 가능   |
|        | 연구활동종사자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계단 난간 설치                    | 가능   |
|        | 연구공간과의 분리 목적이 아닌, 사무공간 확보·마련을 위한 재배치 공사          | 불가   |
|        | 대형 연구장비 설치를 위한 연구실 확장공사                          | 불가   |
|        | 연구실·사무실 공간분리를 위한 분리 공사                           | 가능   |
|        | 인화성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의 재질 변경(불연재료) 및 시실 변경(내화구조) 공사 | 가능   |
|        | 비상대피표지, 안전정보 안내표시 등 설치 공사                        | 가능   |

| 항목      | 집행 가능항목   | 집행 불가항목 |
|---------|---|---------|
| 항목      | 사례  | 인정여부    |
| 주요 구조부  | 연구실 적정 조도 확보를 위한 조명공사                                   | 가능      |
|         | 연구실 보안을 위한 지문인식 도어락 설치 또는 출입문 교체                        | 불가      |
| 배기·환기설비 | 연구실 내부에 체류하는 유해인자(가스, 분진 등) 제거를 목적으로 산업용 공기정화기 설치       | 가능      |
|         | 노후화된 연구시설에 설치된 배출·공조설비의 성능 저하에 따른 시설 개선                 | 가능      |
|         |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가정용 공기청정기 구입 및 설치                           | 불가      |
|         | 후드 및 배출시설 제어풍속 확보를 위한 송풍기(Blower) 교체                    | 가능      |
|         | 노후 샷시(창문) 교체<br>※ 적절한 환기는 급기구와 배기구 설치를 통해 실시 가능         | 불가      |
|         | 연구실의 자연 환기설비(급기구, 배기구) 설치 공사                            | 가능      |
| 가스 설비   | 배기·환기 설비의 점검비용(연구실로 국한)                                 | 가능      |
|         | 유해인자 감지·경보설비(가스, 누액감지기) 설치·보수(연구실로 국한)                  | 가능      |
|         | 가스용기(실린더) 고정을 위한 보관대(또는 스트랩) 설치                         | 가능      |
|         | 가스배관 접합부 확인을 위한 비파괴검사 및 보수비용                            | 가능      |
|         | 가스용기 보관함 및 배관 설치공사                                      | 가능      |
|         | 가스용기(실린더) 사용을 위한 레귤레이터, MFC 설치                          | 불가능     |
|         | 가스용기 및 배관의 안전태그(방향 및 종류표시 등) 구매                         | 가능      |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수시검사 및 사용신고 비용(연구실로 국한)                | 가능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사용시설의 설치·검사 비용(연구실로 국한) | 가능      |
|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정기·수시검사 비용(연구실로 국한)                         | 가능      |
| 전기 설비   | 전기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고온·고전압 장비의 접지공사(연구실로 국한)                 | 가능      |
|         | 전기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배전반 보수공사(연구실로 국한)                     | 가능      |
|         | 전기 안전 법령 관련 점검 비용(연구실로 국한)                              | 가능      |
|         | 연구·실험장비 사용을 위한 멀티탭 구매 비용<br>※연구실에서 멀티탭 사용 지양            | 불가      |
|         | 연구용 PC 고용량 파워(750W) 부품 교체                               | 불가      |
|         | 연구장비 전기부품 노후화에 따른 부품 교체                                 | 불가      |
| 소방 설비   | 화재감지기 및 경보장치 설치 공사(연구실 한정)                              | 가능      |
|         | 소화기, 피난안내도 등 소방관련 제품 구매·제작                              | 가능      |
|         | 소방 안전 법령 관련 점검 비용(연구실로 국한)                              | 가능      |

| 항목       | 집행 가능항목  | 집행 불가항목 |
|----------|--|---------|
| 항목       | 사례   | 인정여부    |
| 긴급세척장비   | 긴급세척장비 설치 비용   | 가능      |
| 시약장      | 강제배기 및 필터 장착 시약장 구매 및 점검비용   | 가능      |
|          | 시약장 전도방지 조치 비용(앵커 고정 등)  | 가능      |
| 폐기물 저장장비 | 폐액 보관용기 설치 및 구매 비용   | 가능      |
|          | 폐액 보관시설 설치 및 보수 비용   | 가능      |
| 연구-실험장비  | 실험대 및 선반 설치 및 보수 비용<br>※ 실험대, 썬크대 등은 연구기반시설로써 연구비에서 집행                                   | 불가      |
|          | 레이저, 고온, 기계장비별 적정 방호장치 설치 비용   | 가능      |
|          | 연구-실험장비 경고표지 부착 비용   | 가능      |
|          | 연구장비 부품(압력계, 온도계, 안전밸브 등) 개조-설치 비용<br>※ 연구장비 구축시 설계단계에서 반영되어야 하는 공정안전 부품으로 연구비에서 집행하여야 함 | 불가      |
| 취급-관리    | 방제약품 및 방제장비, 응급조치 장비 구매 비용   | 가능      |
|          | 식료품 보관을 위한 냉장고 구매 비용   | 불가      |
| 개인보호구    | 보안경, 실험복, 화학보호복,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구매  | 가능      |
|          | 보안경 부착용 시력 보정 도수 렌즈 구매 비용  | 가능      |
|          | 해양 연구용 구명조끼 구매 비용  | 가능      |
|          | 우비, 방한복 등 계절별 보호복 구매   | 불가      |
|          | 사무공간 착용 슬리퍼 구매 비용  | 불가      |

| 항목   | 집행 가능항목   | 집행 불가항목   |
|--|---|---|
| <b>5. 보호장비 구입</b>  |   |   |
| 가. 연구실험의 특성에 적합한 연구활동 종사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의 각종 개인 보호구 및 각종 안전장비의 구매 비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보호구 구입 비용</li> <li>연구활동 특성에 따른 추가 보호구 구입비용(구명조끼, 납조끼 등)</li> <li>화학 흡착제, 소석회, 화학보호복, 공기호흡기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규격 실내화(슬리퍼, 크로스 등) 구매 비용</li> <li>우의, 우산, 팔토시, 냉풍조끼(얼음조끼), 방한복, 방진복, 방진화 구매 비용</li> </ul> |
| 나. 구급약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상구급약 등 구매 등에 관한 비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활동과 무관한 감염병 치료제(타미플루, 코로나19 치료제), 코로나19 진단키트 구매 비용</li> </ul>                            |
| 다. 보호장비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기호흡기 충전 및 용기 교체비용</li> <li>각종 안전장비 교체비용(내구연한 초과 등)</li> </ul>   |   |

| 항목   | 집행 가능항목   | 집행 불가항목   |
|--|---|---|
| 라. 안전관리 활동에 따른 개인용 작업복 구매에 필요한 비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관리 활동에 필요한 작업복</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실 안전 담당자 유니폼 구매 비용</li> </ul>  |
| <b>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b>  |   |   |
| 가. 법 제14조에 의한 안전점검의 준비·실시에 필요한 비용 및 점검 측정장비구입 비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점검 대행 비용</li> <li>안전점검 장비 구매 비용</li> </ul>   |   |
| 나. 법 제15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필요한 비용 및 진단 측정장비구입 비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밀안전진단 대행 비용</li> <li>정밀안전진단 장비 구매 비용</li> </ul>   |   |
| <b>7. 지적사항 환경개선비</b>   |   |   |
| 가.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 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 주요 지적사항(점검-진단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 및 개선대책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비용(연구실안전법 법적 기준 준수 목적)</li> <li>유해인자 노출도평가(작업환경측정) 비용</li> </ul>                     |   |
| <b>8. 강사로 및 전문가 활용비</b>  |   |   |
| 가. 연구실 안전교육과 관련된 안전 전문가 초빙 시 필요한 강사료와 전문가 활용 및 자문에 필요한 비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실 안전교육 외부 강사 활용 및 자문 비용</li> </ul>   |   |
| 나.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발생원인 조사 및 분석 비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실 사고조사 및 분석 비용(전문가 자문 등)</li> </ul>  |   |
| <b>9. 수수료</b>  |   |   |
| 가. 실험실 지정폐기물 및 실험실 폐수 처리에 따른 연구실 안전을 위한 모든 수수료 및 그에 따라 필요한 비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험실 지정폐기물, 폐수 처리 비용 - 위탁, 용역 비용 모두 인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폐기물(폐지, 고철 등) 처리 비용</li> </ul> |
| <b>10. 여비 및 회의비</b>  |   |   |
| 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 연구실 책임자 등이 안전관리 활동과 관련된 출장 등과 연구실 안전관리 위원회 개최 비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안전관리 활동(세미나, 협의회, 학회 등)을 위한 출장비, 등록비</li> <li>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개최를 위한 다대비, 회의비, 인쇄비, 대관료, 출장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회 및 협의회 종신회원비, 연회비 등</li> </ul> |

| 항목   | 집행 가능항목  | 집행 불가항목  |
|--|--|--|
| <b>11. 설비 안전검사비</b><br>가. 위험기계·기구 및 실험설비의 안전 검사 비용(연구실로 국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실 내 크레인, 압력용기, 사출성형기, 국소배기장치, 산업용 로봇 등 산업 안전보건법에 따른 인증/검사 수수료</li> <li>연구실 안전보건진단(산업안전보건법) 비용</li> <li>연구실 소방시설 검사·점검·진단 수수료</li> <li>연구실 기계설비(기계설비법) 점검 비용</li> <li>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설치검사 수수료(연구실만 해당)</li> <li>기타 연구시설·장비의 법적 점검·진단 비용</li> <li>전기 안전진단 용역비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진단 수수료(연구실 면제대상)</li> <li>외부기관에 위탁 안전관리 대행비용 (점검, 진단이 아닌 관리를 목적으로 급여가 포함된 경비)</li> </ul> |
| <b>12. 사고조사 비용 및 출장비</b><br>가.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발생원인 조사 분석 비용 및 사고조사에 필요한 출장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실 사고조사 컨설팅(진단) 비용</li> <li>연구실 사고물질 분석 비용</li> <li>연구실 사고조사 출장비용</li> </ul>   |  |
| <b>1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비용</b><br>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따른 전문가 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가 자문 비용</li> <li>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컨설팅 비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 비용</li> </ul>  |
| <b>1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인건비</b><br>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최소 지정 기준을 초과하여 지정된 자로서 영 제8조 제4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인건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정 지정인원 초과 전담 연구실안전 환경관리자 인건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정 지정인원인 전담, 겸임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인건비</li> </ul>  |
| <b>15. 안전관리 시스템</b><br>가.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학물질·가스 관리시스템 구축·유지 관리 비용</li> <li>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유지 관리 비용</li> <li>기타 연구실 안전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실 안전 담당자의 사무(업무)용 PC,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 태블릿, 프로젝터 등 구매 비용</li> </ul>   |

| 항목                               | 집행 가능항목   | 집행 불가항목 |
|----------------------------------|---|---------|
| <b>16. 기타 연구실 안전을 위해 사용 된 비용</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실안전법에 따라 구축·운영·관리 되어야 하는 기타 안전관리 비용</li> <li>연구실 유해인자 누출사고 복구를 위한 청소·소독 비용</li> <li>연구실 안전 교육장 구축비용(건축물, 의자, 각종 장비 등 포함한 비용 일체)</li> </ul> |         |



Chapter

IV

## 연구실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보상

1. 연구실사고 보고 및 조사(제23조~제24조)
2. 연구실 안전보험(제26조~제27조)



Chapter

# IV 연구실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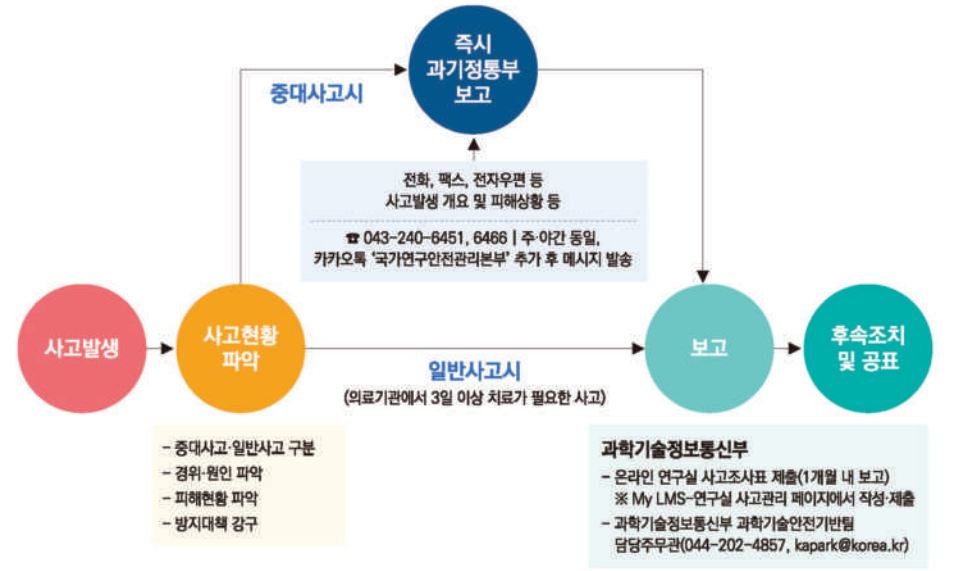
## 1 연구실사고 보고 및 조사(제23조~제24조)

### 경미사고와 중대사고 처리 과정

**Q**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경미한 사고와 중대한 사고로 구분하는데,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연구실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사고처리 절차 등은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구축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고보고 및 대응방법은 2020년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행한 '연구실 사고대응 매뉴얼'(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 제2조제13호에서 정하고 있는 ① '중대 연구실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② 중대 연구실사고를 포함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온라인 연구실 사고조사표'(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사고조사표 작성)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사고 처리 및 치료를 한 후,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연구실사고 발생 현황을 각 기관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표하여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활동종사자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 연구실 사고 보고 대상

**Q** 연구실에서 연구활동 중 시약 운반을 위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복도에서 넘어져 골절사고(3일 이상 치료)를 입은 경우 연구실 사고 보고 대상인가요?

**A** 연구실안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연구실 사고"는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실이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연구활동 중에 이루어지는 시약·운반도 연구활동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해당 사고도 연구실 사고에 해당하여 보고대상에 포함됩니다.

### 연구활동종사자 실수로 사고 발생 시 연구실책임자 책임 여부

**Q** 연구실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실책임자에게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A** 이 법 제5조에 따르면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유지·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여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 제9조에는 "연구실 책임자"는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과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 비치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구 착용에 관한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활동종사자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여부를 떠나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고 그에 대한 책임이 "연구주체의 장"뿐만 아니라 "연구실책임자"에게도 있음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연구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연구실 사고 등 공중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을 가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2 연구실 안전보험(제26조~제27조)

### 2.1. 보험가입 대상 및 기준

#### ☞ 보험가입 대상 연구활동종사자

**Q**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 연구활동종사자는 누구인가요?

**A** 이 법의 제정 취지는 연구실의 안전확보와 사고 후 적절한 피해 보상 등에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 분야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 상시 연구활동종사자는 물론 연구실(실습실)에서 실험·실습 교육을 수강하는 학부생이 연구활동 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등 타 법과의 중복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에 의해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의 경우에는 연구실안전법에서 정하는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따라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도 산재보상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별도로 연구실 안전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위 법에 따라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 연구활동종사자는 반드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 보상사례

연구실 사고의 경우 대학 교수와 학생, 연구원 등이 동시에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학생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법률」에 의해 보상을 받고, 급여를 받는 연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을 받으며, 사립대학 교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연구실 안전 보험

**Q** '21. 4월,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R&D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R&D과제가 종료된 학생연구자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보험에 따로 가입하여야 하는지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연구과제 참여 예정자도 학생연구원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연구과제가 종료되었지만 추후 연구과제 참여 예정인 학생연구자도 산재보험법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에서는 위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각 연구활동종사자를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 또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 보험가입 기준

**Q**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민간보험사 등 상해관련 보험상품이 많습니다. 어떤 보험에 어떻게 가입하여야 하는지요?

**A**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를 위해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은 연구실안전법 제26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는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부상·질병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보험상품 및 종류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상의 보상이 가능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보험보상의 범위는 해당 연구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의 개별성과 특수성에 따라 야외실험, 선박실험 등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약관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 보상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연구실 사고(예시)

- ① 바다에서 스쿠버다이빙으로 시료채취를 하던 중 발생한 안전사고
- ② 자동차공학과와 연구활동종사자가 실험용 자동차를 운행 중, 일반국도에서 안전사고 (단, 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우선 보상받을 수 있음)
- ③ 학교에서 필수 교과 과정인 현장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

참고로, 이 법과는 별도로 학교건물, 국유건물, 공유건물 등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건물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신체손해 배상특약부화재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가스사용량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가스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Q** 대학에서 화재보험회사의 경영자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을 별도로 만들어 가입해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가입 기준을 만족하는지요?

**A**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15조 및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5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인정됩니다. 다만, 경영자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 설정, 장소의 제한, 비급여 치료비의 50%한도 지급, 00대학 관련 실습선 사고 면책, 치료비 180일 한도 제한, 원자력 및 방사능 유출사고 면책, 교외사고 면책, 과실상계 여부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보상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하여 가입하셔야 합니다.

## 2.2 사고보상 기준

### ☞ 사고 발생 시 보상기준 및 보상금액

**Q** 미술대학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연구실로 간주하여 미술대학 학생 모두 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술대학 실습실 사고 시에도 보상이 가능한지요?

**A** 미술대학 실습실의 경우에는 이 법 제2조에서 정한 연구실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해당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 보상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면 약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 ☞ 보험금 반환청구기간 가능 일시

**Q** 보험금의 청구권, 보험료(공제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공제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기간은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상법 제662조에 따라 통상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 치료비 선지급 가능 여부 및 보상되지 않는 비용 종류

**Q** 연구실 사고발생시 미리 치료비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보상이 되지 않는 비용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A**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구 활동종사자의 청구를 받아 요양급여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약관에 따라 상이할 수는 있으나, 통상 분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이 되지 않는 비용의 종류로는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병실료차액,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등이 있습니다. 연구실 사고 보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5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hapter

V

기 타

1. 대학·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제29조)
2. 연구실안전관리사(제34조~제38조)
3.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제28조)



Chapter

V

기타



1 대학·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제29조)

1.1 환경개선(인프라) 지원사업

환경개선사업 지원물품

Q 환경개선(인프라) 지원사업의 지원물품에는 무엇이 있나요?

A 환경개선 지원사업에서는 연구실 표준모델 구축, 안전 보호구·장비 구입, 폐기물 처리비 등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모든 물품·시설의 구축·구매·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는 연구환경 변화를 반영하고자 지속적으로 지원물품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행년도 공고문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환경개선사업 중복지원 가능 여부

Q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컨설팅과 인프라 지원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컨설팅과 인프라 지원은 개별 사항은 두 개 다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인프라 지원은 선정평가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또한 지원금은 신청액을 기준으로 목적부합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환경개선사업 지원절차

Q 환경개선(인프라)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신청한 물품을 대신 구매해 주나요?

A 환경개선(인프라)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신청해 주신 금액 중 선정평가를 통해 집행이 가능한 금액부분만 선정 기관으로 입금됩니다. 선정기관에서는 입금된 지원금으로 신청 물품 및 공사 등을 구매·진행 하시면 됩니다.

1.2 전담조직 지원사업

전담조직 지원사업 신청 자격

Q 전담조직 지원사업은 전담조직이 구축되어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A 전담조직 지원사업은 기관 내에 전담조직이 구축되어 있어도 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항목 중에 인력채용이 있으므로 기관에서는 인력채용 계획이 있어야 평가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전담조직 지원사업 지원 금액

Q 전담조직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3년간 9천만원인가요?

A 전담조직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연간 최대 9천만원을 지원하며, 매년 평가를 거쳐 다음연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최대 3년, 2.7억원)

전담조직 지원사업 지원대상

Q 전담조직 지원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는 지원대상이 안되나요? 본원과 분원으로 구분된 경우 분원으로 신청시 지원대상이 아닌가요?

A 전담조직 지원사업은 현재 대학·연구기관만 신청·지원 가능합니다(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분원에 조직 구축, 인력채용 계획이 있다면 본원과 별개로 분원(예:캠퍼스)만 별도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 2 연구실안전관리사(제34조~제38조)

###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준

**Q**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은 언제 시행되며, 접수기간, 접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제1회 시험을 기준으로 제1차 시험은 7월, 제2차 시험은 10월에 시행되고 있습니다.(향후 시행 횟수 및 시험일은 조정될 수 있음)

그 외 접수기간, 접수방법 등 시험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시행일 90일 이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시험공고 :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safelab.kpc.or.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go.kr),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labs.go.kr)

※ 시험 접수 : 자격시험 홈페이지(safelab.kpc.or.kr)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안전관리사 자격 취득 절차〉



###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학습자료

**Q** 연구실안전관리사 준비 시 참고할만한 서적이거나 자료 등이 있나요?

**A** 과기정통부에서는 자격시험 응시에정자의 원활한 시험 준비(학습)를 돕기위해 연구실 안전 관련 법령, 연구실 안전관리 이론 및 체계, 화학·가스, 기계·물리, 생물 등 7개 시험과목(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 11)에 대한 이론과 예시문항 등을 수록한 <연구실안전관리사 학습가이드>를 발간·배포(‘22.4월) 중이오니 시험 준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습가이드 게시 사이트 : 연구실안전관리사자격시험 홈페이지(safelab.kpc.or.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go.kr),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labs.go.kr)

그 밖에도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 자료실]에서 연구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연구실 안전관리 표준교재, 기타 관련문헌 등을 참고하시어 학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요건(학과)

**Q**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요건 중 “이공계학과” 및 “안전 관련 학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응시자격에 명시되어 있는 ‘이공계학과’ 및 ‘안전 관련 학과’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에서 공시하는 표준분류체계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공계학과는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대계열)에 속하는 학과가 이에 해당하며, 안전 관련 학과는 표준분류체계 내 공학(대계열) - 산업·안전(중계열) - 안전공학, 방재공학(소계열)에 해당하는 학과가 이에 해당합니다.

###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요건(경력)

**Q**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요건 중 “안전 업무 경력”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A** 연구실안전관리사 응시자격에서 안전 업무경력은 “과학기술분야 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과학실의 안전관리 업무, 소방 관련 업무 등 업무의 목적이 안전을 위한 것이고, 사람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업무에 대해 모두 인정합니다.

다만, 생산성 및 제품의 가치 향상 등 금전적·물질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 확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면 경력으로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 업무의 범위를 폭넓게 수용하고 있으나, 경력증명 서류에 업무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 자체 양식에 업무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공고문을 통해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구실안전관리사 합격 유예, 면제

**Q** 연구실안전관리사 1차 시험에 합격했지만, 2차 시험 일정과 맞지 않아 응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 경우 다음 시험에서 1차 시험 면제가 가능한가요?

**A**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하는 ‘다음 회의 시험’이란, 응시자의 응시 회차 기준이 아닌 시험 시행처에서 시행하는 회차 기준이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실안전관리사 전망**

**Q**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 취득 후 전망은 어떤가요?

**A**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취득자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 3)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 강사, 4) 우수연구실 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연구실안전분야의 정책 기획·연구 수행인력, 평가위원, 안전관리 컨설턴트 등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연구실안전관리사가 연구현장에서 연구실사고 예방 및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정책을 지속 발굴·개선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훈련 목적**

**Q** 검정 합격자에게 교육·훈련을 추가로 실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A** 연구실은 타 안전분야 대비 관리범위가 매우 넓어, 업무 수행을 위해 여러 분야(일반, 기계, 전기, 소방, 가스, 위생, 생물 등)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이 필요합니다. 지식 및 경험 습득의 방법으로는 업무 경력 또는 전문적인 교육·훈련 등이 있는데, 자격 취득 후에도 별도의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신설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연구실안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폭넓은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 전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대행기관 기술인력 등)는 교육·훈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훈련(절차, 방법)**

**Q** 합격자 교육·훈련 일정, 횟수, 교육 형태 등은 어떻게 되나요?

**A**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훈련은 모두 오프라인(집체교육)으로 진행되며, 횟수 및 일정은 합격자 및 교육 수요인원에 따라 조정되어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제2차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은 인원은 언제든지 교육·훈련을 신청 및 이수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일정 및 여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교육·훈련에 신청한 후 참석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수하는 경우 이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훈련 신청 사이트 : 연구실·LMO 안전교육시스템(edu.lags.go.kr)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제28조)**

**인증제 신청 대상**

**Q** 연구활동종사자 10명 미만의 기관입니다. 연구실안전법 대상은 아니지만, 기관 자체 안전관리 인식전환을 위해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대학·연구기관 등이 설치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연구실 안전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인증제 신청은 연구실안전법 대상기관의 연구실만 가능합니다.

※ 연구실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는 FAQ 6 페이지('기업부설연구소 연구활동종사자 수에 따른 연구실안전법 적용여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IT업종이며, 연구실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기업부설연구소입니다. 위험한 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IT업종도 신청 대상이 되고,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연구실안전법 대상기관(IT업종 포함)이면 우수연구실 인증제 신청대상이 되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나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www.labs.go.kr)을 통해 안내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제 신청단위**

**Q**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신청 시 기관 단위(캠퍼스, 사업장 등) 또는 팀 단위(학과, 건물 등)로 인증신청이 가능한가요?

**A** 우수연구실 인증제의 인증단위는 연구실 단위입니다. 연구실 단위로 신청서를 접수하며, 접수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인증서와 인증패가 발급됩니다. 팀(학과) 또는 기관 전체 인증취득을 희망하시는 기관에서는 연구실 별로 구분하시어 신청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기관 또는 학과(팀)를 하나의 연구실로 인증 신청하실 경우 접수기관에서 검토(연구실 레이아웃,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 등 확인·검토) 후 한 개의 연구실로 인정이 되시면 하나의 연구실로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인센티브

**Q** 우수연구실 인증을 취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A** 현재 인증을 취득한 연구실에 지원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지원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니 상세한 사항은 당해연도 사업공고(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연구실사업팀 T. 043-240-6447)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증취득 연구실을 대상으로 최우수연구실을 선정하여 장관표창 및 상금 수여
- 연구실 안전유공자 표창 대상자 선정 시 가점 부여
- 연구실 안전환경(인프라) 개선 지원기관 선정 시 가점 부여
- 연구실 정기점검 면제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 까지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및 언론 등을 활용한 인증획득 기관·연구실 대외 공표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한 명예성 제고 및 위상 강화

### 인증 취득 기준

**Q** 인증 컨설팅 지원을 받은 연구실은 인증심사에서 무조건 합격 하나요?

**A** 인증 컨설팅은 인증제 전문가(컨설턴트) 2인이 컨설팅 신청 연구실을 현장 방문하여, 인증심사 항목 별로 연구실 안전환경 시스템 작성요령, 연구실 안전환경 활동수준 구축 방법 등을 안내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컨설팅을 받으셨더라도, 신청 연구실에서 인증심사 항목별 세부기준에 맞는 시스템 구축과 활동수준을 준비하지 못하시면, 인증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자주 질의하는 사항을 모아, 법의 조문 순서대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작성한 참고자료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답변을 수록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법률 해석 및 적용은 대학·연구기관 등의 현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법령 및 고시 등의 제·개정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구실안전법 주요 FAQ

발행일 : 2023년 5월

발행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본 연구실안전법 주요 FAQ 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아래의 기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 043-240-6477, 6421



## 연구실안전법 주요 FAQ